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학교 & 예술강사 대상 통합 설명회

추진일시 | 2021년 4월 16일(금) 15:00 ~ 17:00

추진방법 | 유튜브 송출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

주 최 |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주 관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기관 | 📵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Ι.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소개
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
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체계
3.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기관 조직도 및 업무 안내3
4.	사업 주요 변경사항
Ⅱ.	운영학교 교육활동 안내
1.	운영학교 주요 역할 및 운영 원칙11
2.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관리 매뉴얼14
3.	예술강사 출강 및 근태 확인
4.	중간협의 진행19
5.	학생 만족도 조사(예술강사 평가)
6.	운영학교 주요 협조사항
	예술강사 교육활동 안내
	예술강사 채용 개요 및 근로조건
	예술강사 근로계약 절차
	예술강사 강사비 지급 기준 및 절차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관리 매뉴얼
	예술강사 노무 관련 안내45
	예술강사 증명서 발급47
	예술강사 교육활동 지원49
8.	예술강사 교육활동 준수내용50
IV.	공통 안내
	예술강사 시수관리체계 변경 안내
	협력수업 안내
	원격수업 가이드 ···································
	교육기자재 지원 안내
	교육 현장 모니터링 안내
	기획사업 안내
[FA	AQ] 학교 예술강사 근로계약 관련 ·······73
[관	련서식] 학교 예술강사 각종 서식 ······81
[부	록 1] 원격수업 준비 및 실행 길라잡이 ······97
[부	록 2]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 매뉴얼 ······· 119

I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학교 & 예술강사 대상 통합 설명회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소개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소개

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

□ 추진근거

I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05.12.29. 제정/'17.3.21. 일부개정, 법률 제14630호)
-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체부 공동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양 부처 MOU 체결('08)

□ 사업목적

- ㅇ 공교육 현장에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o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 향상 및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ㅇ 학교별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현장의 특성, 여건을 고려한 예술강사 지원
-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자원·
 교육여건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지원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ㅇ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 준비기간 : '20년 9월 ~)
- 사업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등
- ㅇ 사업내용 :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 교과수업 등의 예술 교육 실시,

지역별 수요·특성·환경 등에 기반 학교 문화예술교육 추진 및 제공

교육기자재(국악분야 제외) 등 무상 지원

- ㅇ 강사-학교 배치 : 운영학교 8,620개교 선정 및 강사 5,065명 선발, 배치
 - ※ '21년도 전국 운영학교 최초 선정 및 예술강사 최초 선발 기준
- 강사료 지원 : 1시수당 43,000원 지원, 사회보험 지원(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 ※ 급식비, 교통비성 비용, 근로자의 날 수당, 휴업수당, 건강진단, 학교 사전방문 보조금 등 별도 지원

- 지원분야: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지원영역 : 교급 및 분야별 지원 교육과정 상이
- ※ (교육과정 내)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선택과목(고등학교)
- ※ (교육과정 외)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 ※ 학교별 지원분야/지원영역 복수지원 가능
- ㅇ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지원을 통한 운영
- o 협력기관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문체부와 예산 분담)
- ㅇ 사업시행 단체
- 사업시행 총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역별 사업운영 : 전국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 지방비 편성, 교부

• 사업추진체계 협의

지원예산 : 총 895억(국고 541억, 지방비 58억, 지방교육재정 296억)

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체계

사업주체

지원금 시청 및 교부 성산 보고

사업실행 및 지원

사업 수업 현장 기획, 관리 운영

사업현장 (운영학교)

[문화체육관광부]

- 부처 간 업무 협의 및 예산 편성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총괄

[시·도 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방비 편성, 교부
- 사업추진체계 협의
- 예술강사 선발 및 노무 관리

[교육부]

- 부처 간 업무협의
- 시·도 교육청 업무 협조 요청

[시·도 교육청]

- 지방비 편성, 교부
- 사업추진체계 협의

[지역운영기관]

-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운영
-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학교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활동 기획, 운영
 ※ 국악, 무용, 연극,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공예, 사진,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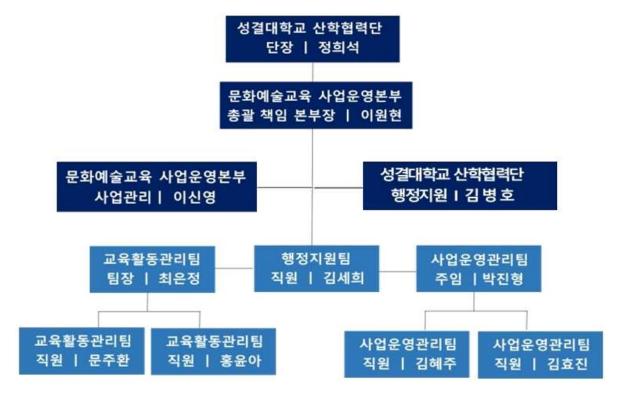
[운영학교 담당교사]

- 사업참여학생(수혜자) 관리
- 예술강사와 협력수업 추진
- 출강결과 및 근태 확인 등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소개

3.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기관 조직도 및 업무 안내

I



직 위	담 당 자	담당업무	전화번호
팀 장	최 은 정	·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관리 총괄 · 주요 정책 및 대외 협력관련 업무 총괄	031-467-8473
주 임	박 진 형	· 부대사업 및 연구사업 총괄 · 사업자문위원 지원 관리 총괄	031-467-8476
직 원	김 세 희	· 사업 예·정산 및 강사료 관리 · 대외 협력관련 업무 지원	031-467-8471
직 원	문 주 환	· 국악 분야 운영 지원 및 관리 · 예술강사 교육활동 및 운영학교 출강 지원	031-467-8484
직 원	홍 윤 아	· 국악 외 7개 분야 운영지원 및 관리 · 사업비 관련 회계 및 강사료 관리	031-467-8475
직 원	김 혜 주	· 기획사업 관리 · 사업 관련 설명회 및 각종 보도자료 관리	031-467-8477
직 원	김 효 진	· 예술강사 역량강화 및 연구모임 관리 · 홈페이지 및 주요 메일 관리	031-467-8478

I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소개

□ 2021년 운영기관 현황

지역	지역운영기관
서울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대구	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컨소시엄 : ㈜ 꿈꾸는 씨어터)
인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대전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	문화예술센터 결
세종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	강릉문화원
충북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
전남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경북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경남	문아트컴퍼니
제주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컨소시엄 : 서귀포 문화원)

□ **2021년 운영기관 세부 정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 1600-0144 (내선번호 1번)

지역운영기관	주소	연락처	이메일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03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미래백년관 306호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1800-8661	seoulta@smu.ac.kr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4787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72번길 8 2층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051) 412-2665	office@bartedu.com
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컨소시엄 : ㈜ 꿈꾸는 씨어터)	(4267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문화예술회관 내 제2예련관	053) 256-7957	dgartecn@naver.com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5호관(남) 432B호 문화예술교육원	032) 860-8008	asinha206@inha.ac.kr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62015)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182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 2층	062) 681-9230	sg4174@hanmail.net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A동 318호	042) 629-7546	arthnu@naver.com
문화예술센터 결	(44529)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7 3층 303호	052) 291-3855	artepartner052@hanmail.net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A동 318호	042) 629-7547	sjhnu@naver.com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성결대학교 재림관 807호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031) 467-8473	skart@sungkyul.ac.kr
강릉문화원	(25517)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96 (교동) 강릉문화원 문화기획팀	033) 823-3204	gwarte@naver.com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867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9-1 혁신관 4층 문화예술 교육센터	043) 299-8676	seowon-arte@naver.com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31238)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학예관 409 호 문화예술교육연구소	041) 530-3052	sch-ace@naver.com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	(5503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15-5(경원동1가)2층 (사)전통문 화마을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063) 232-1902	tcvillage1@naver.com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6193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12 6층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062) 351-2360	ssy3489@hanmail.net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40059)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1903 금수문화예술마을	054) 931-5345	gs9315345@daum.net
문아트컴퍼니	(50843)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497번길 6-6 지하 1층	055) 331-0816	moonartcompany15@gmail.com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632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35 2층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064) 759-3888	goys52@hanmail.net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컨소시엄 : ㈜ 꿈꾸는 씨어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센터 결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릉문화원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문아트컴퍼니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03016) 서울특별시 총로구 홍지문2길 20 미래백년관 306호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본간문화예술교육연합회 (4787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72번길 8 2층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한국국약협회 대구광역시지회 (4267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문화예술회관 내 제2예련관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흥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5호관(남) 432B호 문화예술교육원 (62015)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182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 2층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 2층 (대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 2층 318호 (44529) 울산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44529) 울산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4450) 유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183) 충전기 당양시 만안구성결대학교 조5 경결대학교 재림관 807호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25517)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96 (교동) 강릉문화원 문화기획팀 (28674) 충정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9-1 혁신관 4층 문화예술교육센터 (31238) 충정남도 아산시 신창면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천량로 22 순천향대학교 학예관 409 호 문화예술교육센터 (5503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15-5(경원동1가)상층 (사)전통문화마을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연구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6등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6등 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650643)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1903 금수문화예술마을 무아트컵퍼니 (50843) 경상남도 2해시 가야로 497번길 6-6 지하 1층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03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미래백년관 306호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47878)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272번길 8 2층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412-2665 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 (4267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053) 256-7957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2212) 인천광역시 미추출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5호관(남) 432B호 문화예술교육원 (62015)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모 182 (631-9230) 원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312)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모 182 (621-9230) 원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529) 울산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안남대학교 산학협력단 (44529)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73 중 303호 291-3855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안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529)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73 중 303호 291-3855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안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529)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73 중 303호 291-3855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안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529) 울산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안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529) 울산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안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597) 경기도 안당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성결대학교 재립관 807호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14597) 경기도 안당시 만안구 성결대학교 자립관 807호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14597) 강원도 강흥시 하슬라로 96 (33) (교통) 강응문화원 문화기혁팀 (25517) 강원도 강흥시 하슬라로 96 (33) (교통) 강응문화원 문화기혁팀 (25674) 충정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9-1 핵신관 4층 문화예술 교육센터 (131238)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31238)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대학교 학예관 409 호 문화예술교육연구소 (55039) 전라복도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15-5(경원동17)12층 (사)전통문 화마을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55039) 전라복도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15-5(경원동17)12층 (사)전통문 화마을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6193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12 (62) 351-2360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40059)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054) 931-5345 문화역술마을 연합기의 (40059)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1903 금수문화예술마을 (5504) 331-6316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632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064)

4. 사업 주요 변경사항('20년 대비 '21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선경사명(20년 내미 21년 구표 변경사망 2020년	2021년
一一七	○ 지역운영기관 : 총 17지역 27개 단체	O 지역운영기관 : 총 17지역 17개 단체
운영기관 설정	- 지정 국악운영단체, 공모 선정 운영단체로 설정방식 혼재 - 국악, 7개 분야 분리 운영으로 지역별 2개 운영기관 설정 * 17개 시·도 지역센터 대상 사업 참여 여부 의견 조회→미참여 지역 운영기관 공모 추진	- 전 지역운영단체 공모 선정 - 8개 분야 통합운영, 지역별 1개 기관선정 * '21년 사업 관리체계 재정립 및 사업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8개 분야 통합 공모추진
관계자 역량·협력 강화	 문체부, 교육부, 교육청 및 지자체, 지역운영기관 대상 관계자 워크숍(연 2회) 추진 지역운영기관 실무교육(연 2~3회) 및 실무협의회의 추진 예술강사 및 담당교사 등 현장관계자 대상 현장 모니터링 및 관계자 간담회 상시 추진 	좌동
지원시수	○ 운영학교 지원시수 : 학교별 68 ~ 450시수 * 건별(분야-교육과정) 최소시수는 34시수임 ○ 예술강사 최대시수 : 476시수	 ○ 운영학교 지원시수: 학교별 68~450시수 * 건별(분야-교육과정) 최소시수는 34시수임 ○ 예술강사 최대시수: 476시수 (주 15시수, 월 60시수 미만) *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아동' 분야 중복 참여자의 경우 최대시수 합산 관리예정
학교 선정	 ○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학교 접수 (aschool.arte.or.kr) ○ 지역운영기관별 선정 진행→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선정결과 검토→지역운영기관 최종 선정 	좌동
강사 선발 및 채용	 지역운영기관별 선발 및 채용 * 선발 기준 및 채용 절차는 선발 예술강사의 역량 편차발생 방지를 위해 진흥원이 기본지침 수립 전년도 활동강사 심사 생략 온라인 접수 시, 연간활동계획서 작성에 따른 지역별 전문가 점검 및 점검결과 부적합시 컨설팅 형태의 인터뷰 추진 신규강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 추진 	○ 교육진흥원 선발 및 채용 - 지역별, 분야별 T.O에 따라 선발 ※ 전년도와 지원 자격 기준 동일 ○ 전년도 선발강사는 서류전형만 실시(1차채용), 신규강사 및 일부 전년도 선발강사는 서류 및 면접전형(2차채용) 추진 - 1차채용: (서류)자기소개서 및 연간활동계획서 평가- 2차채용: (서류)자기소개서 및 연간활동계획서, 경력 및 자격증 등 평가/(면접)모의수업 및 인터뷰(국악에 한해 실기 및 이론 추진)
학교-강사 배치	 ○ 제도개선 협의체 및 지역운영기관 협의를 통한 전국 공통 학교-강사 배치 기준 수립및 반영(기준시수 설정, 생활권 및 사업참여 연차 등) ○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활용 예술강사 배치신청 및 운영기관 배치 실무 지원 - 정규배치 총 4회 진행(상호희망재배치 및 2~4회차 배치 시 기준시수 적용) - 정규배치 완료 후, 연중 매주 금요일 추기배치 진행 (온라인시스템 배치신청 기능활용) 	○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활용 통한 예술 강사 배치신청 및 운영기관 배치 실무지원 - 정규배치 총 3회 진행(상호희망재배치 및 2~3회차 배치 시 기준시수 적용) - 정규배치 완료 후, 연중 매주 금요일 추가배치 진행 (온라인시스템 배치신청 기능 활용) ※ 코로나19로 수업 개시가 지연 또는 취소된 강사 및 학교 대상, 상호희망재배치 적용기준 완화 및 추가접수 시행
강사 연수·평가	○ 학교 예술강사 연수 - 신규 강사 대상 교과목별 의무연수 추진 - 법정의무교육(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 학교 예술강사 평가 - 학생만족도 조사 및 예술강사 근태 관리	좌동
시스템 지원	 온라인 시스템(aschool) 운영관리 및 기능추가 개발 운영기관의 효율적 실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추가 기능개선 및 개발 * 기능개선: 접수, 배치 교육활동 관리 등 * 통합운영시스템(UMS) 이력조회서비스 제공 	○ 온라인시스템(aschool) 운영 관리 - 운영기관의 효율적 실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추가 기능개선 및 개발 * 기능개선 : 접수, 배치 교육활동 관리 등 * 통합운영시스템(UMS)은 이력조회서비스 제공 ○ 예술강사 인사노무관리 주체 일원화에 대응한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예술강사 인사 노무 관리	○ (진흥원) 지역운역기관 노무 지원 운영 및 관리 -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노무컨설팅 및 실무교육, 노무 자문(상시) - 예술강사 노조 단체협약 갱신 위임체결	○ (진흥원) 예술강사 직접 고용결정에 따른 인사· 노무관리 직접수행 - 예술강사 근로계약, 취업규칙 수립 및 신고, 사회 보험 관리

		7
	o (지역운영기관) 근로계약 등 노무 전반관리 - 선발, 채용, 취업규칙 수립, 급여지급, 휴직관리, 건강진단 등 인사노무관리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리, 건강진단 및 법정의무교육(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수립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운영 등 노사관계 관리 ㅇ (지역운영기관) 노무 관리 협조 - 예술강사 근태관리, 법정의무교육 및 건강진단 관련 행정 업무 지원 - 강사료, 사회보험, 급식비 등 산정 및 지출업무 관련 협조
사업다각화	신설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시범사업 운영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교과 및 교육과정과 연계, 분야간 융복합 등 주제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학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할 다각화를 위한 연구 기획 및 운영
제도개선 관련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2기) 운영 지원 '21년 사업 직접 운영 결정에 따른 업무 구조 설계 '19년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 결과 등에 따른 후속 실무 기반 마련 지역연계, 융복합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 추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2기) 지속 운영지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앙-지역 간 역할 재설정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향 연구 및 실행계획 도출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발 연구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오라인 연수 콘텐츠 형태 다양화(현장 녹화등) 및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작 정책동향 및 미래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따른 특성화된 연수 프로그램 개발 경력 강사들의 자율연수 강화 참여자가 스스로 기획하는 자율연수 추진, 매개자 학습 모임, 다양한 인력 간 협업 활동 지원체계 마련 	 신규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정책 동향 및 미래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따른 특성화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접근성 높은 이러닝 환경 제공
연구개발	 ○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및 학부모 수요조사 예정 ○ 문화예술교육 통계연감 - 연간 문화예술교육 관련 생산되는 행정통계, 조사통계, 가공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해설을 포함하여 발간 ○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서울 어젠다 연구 	좌동
학교 문화예술교육 홍보/교류	○ 문체부 추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치와 철학, 혁신적 우수사례 등 활용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연중캠페인 강화 ○ 웹진 <아르떼365> 기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현장담론을 이끄는 콘텐츠 기획 및 확산 강화 ○ 국내 예술강사 활동사례 영문화 및 학교 문화 예술교육 현장의 환기를 위한 사전 프로젝트 운영 등 2020 국제행사(ITAC5) 성공개최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성과 온·오프라인 홍보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비대면 시대 문화예술교육 영향력과 중요성 연중 캠페인 강화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학술대회 추진 ITAC 사무국 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
협력망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지속 추진 - `19년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도출내용에 따른 후속 논의 지속 (이슈리포트 검토 및 공개, 대토론회(1회, '20.5월) 개최))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문단 운영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장.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 및 신규 정책과제 발굴('20.10~12월)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및 거버넌스 운영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장, 학계, 기관 관계자 간수시 논의를 통해 정책과 현장 간 연계성 있는사업 개선방안 마련 '23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준비를 위해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안) 모색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학교 & 예술강사 대상 통합 설명회

운영학교 교육활동 안내

Ⅱ │ 운영학교 교육활동 안내

1. 운영학교 주요 역할 및 운영 원칙

- 1) 운영학교 담당교사 변경 및 등록
 - o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에 등록된 운영학교 담당교사가 업무변경 또는 전근 등의 사유로 변경된 운영학교는 반드시 담당교사 변경 필수
 - 담당교사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필수(기존 담당교사 → 신규 담당교사)

※ 주요 인수인계 사항 (기존 담당교사 → 신규 담당교사)

- 학교 선정 내역 및 연간 운영계획, 예술강사 배치 정보
- 담당교사·예술강사 상호 협력수업 진행 방법 및 연간 세부일정 조율
- 예술강사 원격수업(실시간 쌍방향 유형, 콘텐츠 유형) 세부 사항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가이드 등 사업 관련 자료 공유, 교육기자재 관리
-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가입 및 시스템 활용 방법, 예술강사 출강결과 확인 절차
-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내 예술강사 근태 관리, 학생 만족도 조사 진행 절차 등
- 학기중 담당교사 변경 시에도 연간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는 필수이며, 배치 예술강사 대상 담당교사 변경사항 안내 필요
- 2) 예술강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
 - o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 5항, 동일 법 시행령 제 25조 및 「아동복지법」제 29조의 3 제 3항에 의거, 교육기관에 배치된 예술강사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필수
 - 예술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한해 가능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닌 지역운영기관은 법적으로 조회 불가
 - o 따라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운영학교는 배치된 예술강사의 '성범죄 경력'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필수
 - 3) 예술강사 사전방문협의 진행 협조
 - 예술강사 배치 후 연간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강사 첫 출강 전 운영학교-예술강사 상호 사전방문협의 진행 협조** 필요
 - ※ 예술강사 사전방문보조금은 학교당 1회 지원됨에 따라 지급 근거자료인 담당교사 확인 및 서명 필수
 - ※ 코로나19 관련 학교 운영 방침 등에 따라 비대면 협의 가능하며, 비대면 진행 시 사전방문보조금 미지급
 - ※ 예술강사 근로계약 필수 서류 "월별 출강 계획서" 및 "사전방문보고서" 작성 협조

- o 예술강사 사전방문 시 주요 협의사항
- 연간, 월간 수업일정 및 교육 목표, 방향성 관련 논의
- 협력수업 진행 방법 및 연간 교육활동 진행 시 역할 등에 관한 상호 협의
- 수업 환경(장소, 활용 가능한 기자재, 수업 관련 재료 및 교재 등) 확인
- 교육대상자 관련 특이사항 및 관련 정보 공유 등
- 4) 운영학교 변경사항 발생 시 진행 절차
 - 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및 배정시수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u>2주 이내에 변경사항을</u> 예술강사 및 운영기관과 반드시 협의해하 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 진행

 1
 2
 3
 4

 학교의교육과정변경. 시수변경. 운영포기등 변경사항발생
 예술강사와 협의 후 운영기관에 유선 연락 등의 절차로 명경사항발생
 변경 요청 공문 발송 (운영학교 변경 신청서 공문에 붙임파일로
 변경 신청 반영이 완료된 운영학교로 승인여부 통보 (유선 연락 등)

해당사항문의

※ 단, 학교-강사 간 출강요일 변경, 수혜학급 변경 등의 사항은 변경 요청 공문 발송 불요 (출강요일 등 일정 변경, 수혜학급 변경 시 예술강사와 사전 협의 필수)

첨부 필수)

- 신청 방법: 변경요청 공문 발송(운영학교) → 변경요청 승인 및 학교측으로 통보(운영기관)
- 공문 수신처: 성결대학교[성결대학교총장], (경유)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담당자
- 필수 기재사항: <u>"경기 8개 분야 운영학교 변경신청서"</u>에 최초 운영학교 접수 신청 시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에 입력한 사항 전체를 작성, <u>공문에</u> <u>붙임파일로 첨부하여 제출</u>
- ※ 경기 8개 분야 운영학교 변경신청서는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 공식 홈페이지(링크) https://bit.ly/2PBIaqC 접속 후 붙임 2번파일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8개 분야 운영학교 변경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과정, 배정시수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강사배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배치된 예술강사 및 지역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시수를 변경하거나 운영을 포기하는 학교는 차년도 학교 선발심사 시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비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5) 교육활동 진행 중 예술강사 변경
 - ㅇ 배치강사 휴직 및 강사 포기
 - 출강중인 예술강사가 개인사유 등으로 교육활동을 중단하거나 휴직 또는 강사활동 포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배치(매주 금~월)를 통해 교육활동을 대체할 예술강사 배치
 - 예술강사가 운영기관에 휴가원(휴직, 활동포기 등)을 제출할 시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추가배치를 통해 대체강사 배치 * 대체강사 배치 확정까지 약 1~2주 소요
 - o 배치강사 출산전·후 휴가
 -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산모의 보호를 위해 출산 후 45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휴가기간 산정(근로기준법 제 74조) ※ 다태아의 경우 휴가기간 최대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 해당 예술강사는 출산전·후 휴가 3~4주전 학교-운영기관과 휴가기간 및 대체강사 출강 일정 등을 협의 후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내 추가배치를 통해 대체강사 배치 진행
 - * 그외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10일), 유·사산 휴가(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 난임치료 휴가(최대 3일) 등의 사유로 인한 대체강사 필요 시 동일한 절차로 진행(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추가배치)
- 6) 학교 배정시수 운영 원칙 및 주의사항
 - ㅇ 학교 배정시수는 자유학기제 및 단기 특강, 방과후 학교로 활용 불가
 - ㅇ 기타 학교 행사 및 체험학습, 수학여행(캠프) 등 지원 불가
 - 예술교육 관련 수업 외 특기적성 수업활동은 불가하며, 발표회만을 목적으로 진행되는수업이나 각 학급별로 다른 작품을 올리는 등의 무리한 요구 지양
 - ㅇ 수업 관련 발표회를 진행할 경우 예술강사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필수
 - ※ 그 외 수업과 무관한 평가(학업성취, 수행평가 등) 및 학생 출결관리, 시험 관리감독 또한 수업의 최종 책임자인 담당교사의 고유 권한이자 역할입니다. 따라서 예술강사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관리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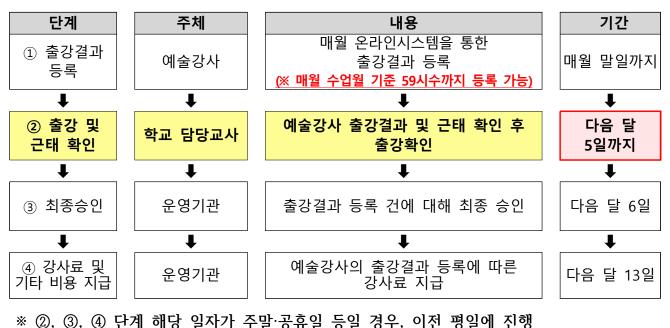
- 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로그인
 -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or.kr)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동일
 - 오라인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온라인시스템 권한 신청 후 이용 가능
- ※ 운영기관에서 담당교사 재직 확인 및 권한 승인 완료까지 최대 2~3일 소요
- ※ 전근 등의 사유로 전년도와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인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기존 권한을 삭제한 후신규 권한 신청 필요



2) 예술강사 출강확인

○ 운영학교 담당교사는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을 통해 <u>예술강사가 등록한</u> 출강결과 매월 확인 및 승인 필수

□ 강사료 지급 절차



□ 유의사항

- <u>예술강사 출강확인은 강사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절차로, 출강확인이 지연될 경우 강사비가</u> 이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출강확인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강사는 출강결과를 통해 수업일, 수업시간, 수업대상, 수업주제, 수업내용 및 특이사항,중간협의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출강확인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 <u>예술강사의 실제 출강 및 지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u> 특히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학교담당교사 출강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강사료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 실제 출강 및 지각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메인페이지] [교육활동관리] 메뉴 클릭



3. 예술강사 출강 및 근태 확인

- 1) [교육활동관리] [출강 및 근태 확인] 메뉴 클릭
- 수업주제를 클릭하여 예술강사가 등록한 출강결과 세부 내용 확인 가능
- 예술강사는 수업 유형에 따라 ① [실시간] ② [콘텐츠] ③ [오프라인] 세가지 유형으로 출강결과 등록
- [콘텐츠] 유형은 운영학교에 제공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의미함
- 예술강사의 출강관리는 '강사-분야-교육과정' 별 별도 관리
 - ※ 동일 분야 강사가 2개의 교육과정 수업 시, 예술강사 근태관리 별도 진행
 - ※ 다른 분야의 강사가 2인 이상 배치 시, 예술강사별 근태관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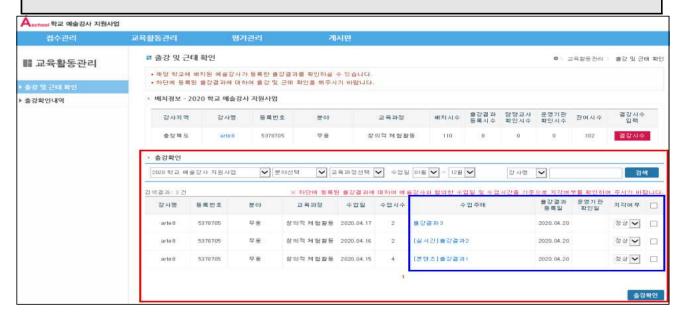
- 2) 예술강사 출강결과 및 지각여부 확인
- 예술강사가 등록한 출강결과 내용(수업유형, 수업일, 교시, 주제, 내용 등)를 토대로, 예술강사의 출강 내용 및 지각 여부 파악 가능
- 대면수업의 경우, <u>예술강사가 계획한 수업일 기준으로 정상 출근했으면 '지각여부'</u> 항목에서 '정상'을 체크하며, 지각이 확인되면 '지각여부' 항목에서 '지각' 체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원격수업에 따른 수업유형별 출강결과 확인]

-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담당교사와 예술강사가 계획한 수업일 및 시간을 기준으로,
 - ③ 대면수업(기존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 ② **콘텐츠 제작·활용 방법의 경우 1차시당 4시수만 출강확인이 필요하며**, 제작부터 공급까지로 업무 내용이 한정되므로 **모든 수업의 근태정보는 '정상'으로 입력**

구 분	수업유형	출강확인시수	시스템 내	근태 입력 방법
1	실시간 쌍방향 유형	실제 수업 시간	'수업주제'표시 내용 - [실시간]	예술강사 출강 현황에 따라 '정상' 또는 '지각' 입력
2	콘텐츠 제작·활용 유형	1차시당 4시수	'수업주제'표시 내용 - [콘텐츠]	'정상'입력
3	대면수업 유형	실제 수업 시간	대면수업은 '수업주제'내 수업유형 별도 표기 없음	예술강사 출강 현황에 따라 '정상' 또는 '지각' 입력

- 확인(승인)하고자 하는 출강결과 선택 후 '출강확인' 버튼 클릭
- 콘텐츠의 수업일은 예술강사가 운영학교에 콘텐츠를 제출한 날짜 기준으로 작성
- ※ '지각'으로 체크한 내용은 하단의 [근태확인] 에서 별도 확인 가능
- ※ '출강확인' 처리한 모든 출강결과(*지각 체크한 출강결과 포함)는 [출강확인내역] 메뉴에서 확인



- 3) 결강시수 등록
- 예술강사 결강한 시수가 확인되면 결강시수 등록 필요
- 결강시수 등록 전, 반드시 예술강사와 해당 사실 공유 필수



결강시수 관련 정보는
 최대한 상세히 작성 필요



※ 수업일, 결강시수, 수업예정교시, 결강사유, 담당교사 대상 사전 공유 여부 등



※ 지각 및 결강시수 등록 예시

(지각은 수업일 기준 1분 이상 지각 시 체크 / 결강은 시수 기준으로 수업계획 대비 결강시수 모두 표기)

	스어에저		에스가시	예술강사	근태 처리(입력)			
구분	수업예정 시간	교육과정	예술강산 출큰시간	예술강사 출강 등록 시수	출강결과 확인	결강시수		
A강사	1, 2교시	창의적체험활동	1교시 시작 후	2	지각	0		
AS A	4, 5교시	기본교과	5교시 시작 전	1	지각	1		
B강사	3, 4교시	선택과목	출근안함	0	없음	2		

4) 근태내역 확인 및 수정

- 담당교사가 입력한 결강시수, 출강확인 시 체크한 지각 내용이 [근태확인] 란에 정리되어 표시됨
- 운영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한해 근태 입력 내용 수정 가능
- 운영기관의 확인이 완료되면, 예술강사가 근태 내역 확인 가능



[운영기관 협의 여부]

- 협 의 : 지각 및 결강 전, 운영기관과 해당 내용을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한 경우,

운영기관이 해당 사항을 '협의'로 표기

- 미협의 : 지각 및 결강 전, 운영기관과 해당 내용을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이 해당 사항을 '미협의'로 표기

- 해당없음 : 담당교사가 오등록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운영기관이 해당 사항을

'해당없음'으로 표기 (*'해당없음' 으로 표기된 내용은 예술강사가 확인할 수 없음)

- ※ 운영학교-예술강사-운영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수업일을 변경하여 보강을 계획한 경우 '수업일 변경'으로 처리하여 결강시수를 등록하지 않음
- ※ 이외, 모든 결강시수와 지각 내역은 운영기관 사전 협의 여부에 관계없이 온라인시스템 내 처리 진행

5) 출강확인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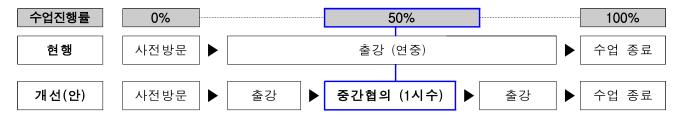
- ㅇ [교육활동관리] [출강확인내역] 메뉴 클릭
- 담당교사의 출강확인이 완료된 출강결과 내역 확인 가능
- 출강확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확인취소' 버튼 클릭
- ※ 출강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출강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 * 운영기관의 최종 승인이 완료된 건은 담당교사 출강확인 취소 및 수정 불가
- ※ [출강 및 근태 확인] 탭에서 지각으로 체크한 출강확인 내역의 '확인취소'시, [출강 및 근태 확인] - [근태확인] 탭 내 지각 내역도 자동 삭제됨



4. 중간협의 진행

- 1) 중간협의 개요
 - 학교에 배치된 시수 중 50% 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교육활동 현황을 중간 점검·보완하는 절차로, **분야·교육과정별 배치시수 중 1시수**를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제도
 - ※ 중간협의는 연간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권장사항이며,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간 논의 후,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 (*배치시수 내 1시수 활용)
 - ※ 해당(중간협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전체 배치시수를 수업에 활용 가능

2) 중간협의 추진절차



- 3) 중간협의 결과 확인 방법
- <u>예술강사가 온라인시스템 출강결과 내 중간협의 내용을 작성함에 따라 출강확인과</u> 동일한 절차로 중간협의 내용 확인 및 진행



- 수 업 일 : '예술강사-담당교사' 간 중간협의 일자 명시

- 수업주제 : '중간협의'명시

- 수업내용 : 수업 및 중간협의 결과 작성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업과 중간협의를 같은 일자에 진행한 경우, 수업 및 중간협의 주제, 수업 및 중간협의 내용 등을 하나의 출강결과로 병기 가능함에 따라 출강확인 시 상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4) 중간협의 주요 논의사항 (예시)
- 수업 지도안 등 교수학습활동의 흐름 공유
-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준비물, 교구, 기자재 점검
- 학생 반응 등을 통한 수업의 흐름, 범위 등 조정
- 다음 차시를 위한 피드백 및 개선사항 논의
- 수업 진행 방향에서의 논의점 협의 등

※ 중간협의 예시

[예시1] 각 교육과정에 강사가 한 명씩 배치된 경우

	중간협의 시					
배치 학교	분야	교육과정	배치 강사	배치시수	수업 시수	
A학교	7.01	기본교과	D강사	100	99	
	국악	창의적체험활동	E강사	100	99	

[예시2] 한 교육과정에 여러 명의 강사가 배치된 경우

	중간협의 시				
배치 학교	분야	교육과정	배치 강사	배치시수	수업 시수
B학교 영	영화	선택과목	F강사	100	99
	9 최		G강사	100	99

[예시3] 여러 교육과정에 한 명의 강사가 배치된 경우

	중간협의 시				
배치 학교	분야	교육과정	배치 강사	배치시수	수업 시수
C학교	П.О.	창의적체험활동		100	99
	무용	토요 동아리	H강사	100	99

5. 학생 만족도 조사(예술강사 평가)

- 1) 학생 만족도 조사 개요
- ㅇ 추진목적
- 기존 다면 평가를 학생 만족도 조사 중심으로 추진하여, 피평가자에 대한 제재가 아닌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평가 시행
- 학생 만족도 조사의 제도화를 통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발전의 토대 마련
- ㅇ 주요내용
- 조사기간 : 2021. 3. ~ 12.(상시)
- 대 상 자 : 배치받은 분야-교육과정 건의 수업이 전체 종료된 예술강사
- ※ 강사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온라인시스템 담당교사 페이지 내 만족도 조사 URL이 자동 생성되나, 운영학교는 분야-교육과정 건별 수업 종료 후 조사 시행 필요
- ※ 강사 및 학교 포기 시에도 1시수 이상 출강하였을 경우 만족도 조사 시행 필요
- 수 행 자 : 예술강사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급의 수혜학생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제외
- 조사시기 : 분야-교육과정 건별 수업 종료 후 실시
- ※ 운영학교는 수업 종료 시점 기준으로, 1차 또는 2차 마감기한 내 조사 실시

회차	1차	2차(최종)		
ㅈ , , , , , , , , , , , , , , , , , , ,	7.16.(금) 까지	12.17(금) 까지		
조사실행 및 마감(운영학교)	*수업종료일이 7.30. 이내일 경우	*수업종료일이 12.31. 이내일 경우		
조사결과 점검 및 게시	(결과점검) 7.19.(월)~7.23.(금)	(결과점검) 12.20.(월)~12.24.(금)		
(운영기관)	(결과게시) 7.26.(월) 17:00 게시	(결과게시) 12.27.(월) 17:00 이후 상시		
조사결과 조회(예술강사)	7.26.(월) 17:00 이후 상시	12.27.(월) 17:00 이후 상시		

- 단, 12월 말 수업 종료 예정 건의 경우, 수업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2차(최종) 조사마감일 (12.17.) 내 조사 완료 필요
- 조사결과는 수업 종료 시점 및 학교별 조사 완료시점에 따라 2회에 나누어 게시되며, 예술강사는 게시 이후 상시 확인 가능

÷ŀ ¬	분야/	배치		최종		조사	조사	นไ ¬
학교	교육과정	강사	배치시수	출강시수	출강기간	마감기한	실행횟수	비고
A학교	연극	a강사	100	100	3~12월	12.17	총 1회	분야·교육과정 1건에
A ¬ #	기본교과	۵۰۵۸۱	100	100	J. 12 ⊒	까지	0 14	대한 조사 총 1회 실시
	국악	b강사	100	100	3~11월	12.17		
B학교	기본교과	D 0 1	100	100	0 11 2	까지	총 2회	분야·교육과정 2건에
	국악	c강사	50	50	3~7월	7.16	0 44	대한 조사 총 2회 추진
	창의적체험활동	C-6/1	30	30	J**/ ⊒	까지		
		d강사	80	80	4~10월	12.17		분야·교육과정 1건에
C학교	무용	u o / I	00	00	T-10 =	<i>까</i> 지	총 2회	배치된 2명의 강사에
CATE	창의적체험활동	e강사	20	20	10~12	12.17	등 실퍼	
		6.971	20	20	월	<i>까</i> 지		대한 조사 총 2회 추진
				8				강사 및 학교 포기 건도
D학교	공예	f강사	60	(8시수	4월	7.16	총 1회	1시수 이상 출강했을
,	돌봄교실	0 1		출강후	_	까지	,	경우 조사 추진 필요
	디자인			포기)		7.16		01 - 115 5-
			40	40	3~6월			동일한 강사가 2개의
E학교	창의적체험활동	g강사				까지 7.16	총 2회	교육과정에 배치되었을
	디자인		50	50	3~6월			경우 초사 총 2회 추진
	토요동아리					까지		3 3

- o 조사방법 :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을 통한 온라인 조사
- 배치 완료 시 생성되는 만족도 조사 URL을 담당교사가 수혜학생 대상으로 배포하여 학생별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예술강사의 예술전문성, 수업구성, 학생에 대한 태도, 성실성, 종합 만족도 등 수혜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대한 온라인 조사 실시
- ※ 5점 척도의 객관식 문항 5개 및 서술형 문항 1개로 구성
- o 결과활용 : 예술강사 대상 향후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세부 조사결과 개별 제공

ㅇ 조사 진행절차

사전준비		조사실행						결과제공
사전안내		① 조사 URL 배포 (담당교사)		② 조사 진행 (수혜학생)	③ 조사 마감 (담당교사)	④ 최종 게시		조사결과 확인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대상 만족도 조사 관련 사항 사전 안내 (협조문 등) *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	수업 종료 후 수혜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유의사항 안내 및 온라인시스템 내 생성된 조사지 URL 공유	•	해당 URL에 연결된 온라인 조사지에 접속하여 만족도 조사 시행 ※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급의 학생 조사 참여 필요	조사완료 여부 및 입력사항 검토 후 최종 제출 ** 온라인시스템 내 [마감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 ** 조사 마감 기한 회차 마감기한 1차 7.16.(금) 2차 12.17.(금)	조사결과 점검 및 마감처리 완료 건에 한해 최종 게시 ** 운영기관 최종 게시 이후 조사결과 수정 불가	•	개별 조사 결과 조회 ※ 결과조회 시점 회차 조회기간 1차 7.30.(금) 2차 12.31.(금) ※ 해당 시점 이후 조회 가능
운영기관				운영학교	운영기관		예술강사	

ㅇ 조사지 문항

-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따라 설문 문항의 기술을 달리하여 초등용 및 중등용 문항 상이 ※ 대안학교의 경우 초등용 설문지 사용
- 예술전문성 영역의 경우 '기본교과' 교육과정 여부에 따라 문항 상이
- 5점 척도의 객관식 문항 5개 및 서술형 문항 1개로 구성

78	7	: પ્રાત્મ ભા	세부내용		설문	문항
구분	د	도사 영역			초등용	중등용
예술	1	예술	해당 분야에서 출중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	기본 교과	선생님의 수업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나요?	선생님 덕분에 교과 내용에 대한 보다 풍성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전문성	1	전문성		전문가 기본	선생님의 수업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나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예술적 체험을 제공해 주셨다.
교육	2	수업 구성	수업내용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예술적 자극과 몰입을 경험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있어서 시간이 금방 갔나요?	선생님의 수업은 체계적이고 재미있어서 집중할 수 있었다.
전문성	3	학생에 대한 태도	수업에서 바람직한 말투, 행동, 태도로 학생들과 존중하는 상호작용		선생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나요?	선생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셨다.
기본 자질	4	성실성	수업시간 엄수 및 충실한 수업		선생님은 수업을 열심히 하셨나요?	선생님은 수업에 성실히 임하셨다.
전반적	5	종합 만족도	학교 예술강사와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선생님의 수업이 좋았나요?	전반적으로 선생님의 수업은 만족스러웠다.
만족도	6	종합의견 (개방형)	수업의 장단점에 대한 전반적 의견		선생님 수업의 좋은 점이나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시항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 1~5번은 해당 문항에 대해 평소 학생들이 느낀 예술강사 선생님의 수업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클릭하여 응답
- ※ 6번은 평소 예술강사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꼭 말하고 싶었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응답(서술형)

6. 운영학교 주요 협조사항

- 1) 예술강사 출강 승인
 - 예술강사 출강승인은 강사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절차로, 출강승인 지연으로 강사비가 이월될 경우 임금체불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음.
 따라서 반드시 기한(예술강사 출강 익월의 5일) 내 출강 승인 완료 필요
 -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활용
 - o 단, 예술강사의 실제 출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교사 출강 승인이 진행되었을 경우 강사료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ㅇ 예술강사 출강일은 월~토요일 중 학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을 원칙으로 함
 - ※ 공휴일 및 일요일 출강 불가
- 2) 사전방문협의 진행 협조 및 확인
 - o 예술강사 배치 완료 후, 예술강사의 연간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 출강 전 학교당 1회에 한해 예술강사 대상 학교 사전방문협의 비용을 지원함. 이에 원활한 사전방문비용 지급을 위해 **사전방문협의 이후 "사전방문보고서" 내 담당교사 확인(서명) 필수**
 - ㅇ 사전방문협의 시 연간 수업 일정 및 연간 수업내용 상호 확인 필수
 - o 예술강사는 학교와 협의결과에 따라 연간 계획을 세우며, 운영학교는 사전협의 내용에 맞게 연간 교육을 운영함. 따라서 **협의내용 변경 필요 시 강사와 반드시 재 협의 필수**
- 3) 중간협의 및 확인
 - 연간 교육활동 진행 중반부에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업 진행방향에 대한 조율을 위해 학교-강사 간 중간협의를 권장함.(단, 학교와 강사가 상호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
 - 중간협의 진행 시 학교 선정시수 중 강사별 1시수가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되며, 강사의 중간협의 비용은 온라인시스템 출강결과 등록 및 담당교사 출강승인을 근거로 지급됨
 (강사와 연간계획 수립 시 해당사항 고려 필요)
 - * 해당 학교 출강 강사 대상 1회 지급(1시수에 해당하는 강사료 지급)
 - * 필요시 연간 교육활동 종료 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한 사후협의 진행 가능(단, 강사 대상 별도 비용지급 없음)

- 4) 문화예술교육 배정시수 운영 지침
 - <u>예술강사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는 인력이 아닌</u>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계약 체결 후학교에 파견되는 근로자로서 학교측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교사, 방과후 강사 등과 동일한 역할(수행평가,관리감독,생활지도부 기록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님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에 출강하는 모든 예술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주 15시수, 월 60시수 이상 출강할 수 없음
 - o 문화예술교육 배정시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배정시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예술강사 및 지역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반드시 사전 협의 후 변경해야 함
 - ※ 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배정시수를 변경하여 결손시수가 발생하거나, 배정시수를 초과하여 초과 시수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강사료 등)은 학교측에서 부담해야 함
 - 학교에 배정된 수업시수는 <u>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학교(프로그램)로 활용 불가</u>하며, 예술강사 수업과 무관한 <u>시험감독, 수행평가, 소풍, 수학여행, 캠프 등 행사지원은 불가</u>함. 예술강사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강사가 배정받은 수업 시간 이외에는 지원 불가
 - o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포기(변경)하는 경우 차년도 학교 선정 시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비선정되거나 선정시수가 삭감될 수 있음
 - o 방학, 소풍, 학교행사 등 사전에 확인 가능한 학사일정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예술강사에게 공유해야 하며, 학사일정 및 수업일정 변경사항은 최소 1주일 전 예술강사와 협의 완료 필수
 - o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업일정 변경(학교 휴교)의 경우에도 사전에 예술강사와 협의를 완료 하여야 함. 학교의 사정으로 취소된 수업에 대해 강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출근하여 발생한 비용은 학교측에서 부담하여야 함 (예: 수업 취소 관련 "학교-강사" 간 미협의 등)
- 5) 수업진행을 위한 실기교실 및 교육기자재 제공 등 교육환경 조성
 - 교육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기교실 제공 등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기자재의 부자재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수업 전·후 예술강사 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사 대기실, 휴게공간 등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제반 사항 협조 필요
 - 연극·무용(실습실 또는 무용실) 등의 분야 실기교실(공간)
 - 강사 대기실, 책상 등 교육활동 편의 제공 및 휴게공간 제공 필수
 - 강사의 교내 교원 식당 이용 협조(배치 후 강사 희망 시)
 - o 학교에서 제공 가능한 소모품 등의 추가 교육기자재는 배치된 강사에게 출강 이전에 공유하여 예술강사의 수업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특히,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강사자비로 부담하지 않도록 학교의 사전 지원(예산)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원 협조 필요
 - o 교과수업은 교육목표에 맞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 및 교과서 등 참고자료 지원 협조 필요

※ 수업진행에 필요한 재료 및 자료 지원

- 소모품(모든 분야), 재료비, 교보재, 복사비 등 학교측 부담 필수 (수업진행에 필요한 재료비를 강사 자비로 부담하지 않도록 학교 협조 필요)
- 특히 교과수업의 경우, 예술강사 교육에 필요한 교사용 지도서 등 지원 협조

6) 담당교사-예술강사 협업 수업 진행

- o 예술강사는 예술분야 전문가이므로 담당교사는 예술강사 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 필요
- o 예술강사는 원칙상 단독 수업이 불가하므로 담당교사는 교육 계획수립 단계부터 수업 진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예술강사와 상호 협업 필요
- o 교사는 수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술강사와의 협업수업에 적극 임해야 함

7)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 이 지역별로 추진되는 운영학교 대상 사업설명회 참여를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이해 제고 및 운영학교 담당교사의 역할 숙지
- o 지역 내 수요에 따른 기획사업 및 교육 현장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부대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필요
- ※ 관계기관을 포함한 운영기관의 컨설팅, 만족도 조사, 학교 방문 및 수업 참관 모니터링 등
- 교육기자재는 예술강사의 수업 중에만 활용되어야 하며, 학교 책임 하에 기자재 관리 필요 해당 교육기자재는 사업 종료 후 운영학교에 자동 귀속(사진분야 카메라 제외)되며, 학교 및 학생의 과실로 인한 고장 및 파손 시 운영학교에서 유지보수 진행 필요
- ※ 교육기자재 관리 소홀로 인한 작동불능 및 분실 시 재 지원 불가
-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지원된 기자재에 따른 부자재 및 추가 기자재, 소모성 물품,재료 등은 운영학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예술강사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는 인력이 아님에 따라 결핵검사 등 건강검진표에 대해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운영 기관을 통해 예술강사 대상 매년 시행되고 있는 건강진단 결과(결핵검진사항 포함)를 제출하여 갈음하고 있음

 \prod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학교 & 예술강사 대상 통합 설명회

예술강사 교육활동 안내

Ⅲ │ 예술강사 교육활동 안내

1. 예술강사 채용개요 및 근로조건

1) 예술강사 채용개요

o 사업기간: 2021년 3월~12월(10개월)

ㅇ 채용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8개분야)

ㅇ 채용기간 : 배치된 학교의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에 따라 채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ㅇ 채용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학교 예술강사 선발 주체 변경(('20년도)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 ('21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근로조건

- ㅇ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주 14시간 미만)
- ㅇ 연간 배정시수에 따라 지급, 연간 최대 476시수 이내(1시수당 43,000원)
- ※ 단『도서벽지 교육진흥법』대상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도서벽지수당 10,000원 (1시수당) 추가지급
- ㅇ 3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o 근무장소 :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등
- 신청 지역내 학교 배치가 원칙이나, 지역별 수요 등에 따라 타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 학교에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수업시간에 수업진행

ㅇ 담당업무 : 배치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한 교육계획 수립 및 분야별 예술교육 실시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총 8개분야)

- 교육과정 : (교육과정 내) 기본교과, 선택과목(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외)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초등학교)

3) 유의사항

- o 지각, 조퇴, 결강, 결근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운영학교 및 운영기관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o 예술강사-운영학교 상호 협조관계 유지를 통한 협력수업 진행 필수(예술강사 단독수업 진행불가)
- 본 사업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제외(2019.12)에 따라 예술강사는 출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창작활동, 공연예술활동 등 예술인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자유롭게 종사 할 수 있음

2. 예술강사 근로계약 절차

1) 근로계약 추진절차

ㅇ 추진형태 :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활용

ㅇ 추진대상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 강사 중 출강일정 협의가 완료된 강사

* 계약의 필수서류인 <u>'월별 출강 계획서' 및 '사전 방문보고서'</u>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완료된 강사는 근로계약 체결 링크가 포함된 메일이 전송되며, 별도 안내문자 발송 예정

※ 3월 출강 강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사후 수리 허용

o 추진방법 : 온라인시스템(A-school) 접수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는 개별 링크가 포함된 안내메일을 통해 전자 계약 및 서류 제출

o 추진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2월 (상시)



ㅇ 서명 및 제출서류 서류항목

구분	근로계약 체결 및 동의서 서명	제출 서류
항 목	① 표준근로계약서 ② 예술강사 총 출강표 ③ 직무청렴 서약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① 신분증 ② 통장사본 ③ (해당자) 장애인 출강 보조금 증빙서류 (장애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복지카드 앞 뒷면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 근로계약 내용, 서명, 제출 서류 수정 필요시 재작성 처리 예정(안내 문자 발송 및 근로계약체결 메일 재발송)
- ※ 최초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변경은 ①표준근로계약서와 ②예술강사 총 출강표만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진
- ㅇ 근로계약 체결 매뉴얼

[부록 2]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 매뉴얼" 참고

3. 예술강사 강사비 구성 및 지급 기준 및 절차

1) 강사비

ㅇ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한 출강결과를 바탕으로 1시수당 43,000원 지급

2) 교통비

- ㅇ 계약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어 거리값이 변경되어도 교통비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음
- o 동일날짜에 교통비가 발생되는 2개 이상의 학교에 출강한 경우, 원거리(많은금액) 기준으로 1개 학교 교통비만 지급
-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교통비 단가 기준

거리구간(Km) (이상~미만)	0~29	30~40	41~60	61~80	81~100	101~120	121~140	141~160	161~180
교통비 단가 (원)	0	8,000	9,000	10,000	11,000	13,000	15,000	17,000	19,000
거리구간(Km) (이상~미만)	181~200	201~220	221~240	241~260	261~280	281~300	301~320	321~340	341~360
교통비 단가 (원)	21,000	25,000	29,000	33,000	37,000	41,000	45,000	49,000	53,000
거리구간(Km) (이상~미만)	361~380	381~400	401~420	421~440	441~460	461~480	481~500	501~520	521~540
교통비 단가 (원)	57,000	61,000	65,000	69,000	73,000	77,000	81,000	85,000	89,000
거리구간(Km) (이상~미만)	541~560	561~580	581~600	601~620	621~640	641~660	661~680	681~700	701~
교통비 단가 (원)	93,000	97,000	101,000	105,000	109,000	113,000	117,000	121,000	125,000

3) 급식비

o 1시수 이상 출강일이 속해있는 월 일괄 70,000원 지급 (출강시수 없는 월은 미지급)

※ 강사비 및 각종 수당 지급 유형

유 형		인정시수	교통비/도서벽지 /숙박보조금	급식비	장애인 출강보조금
וסודט	① 실시간 쌍방향	1시수	0	0	0
온라인	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4시수 (1차시 기준)		0	0
오프라인	③ 대면수업(기존)	1시수	0	0	0

※ 교통비, 도서벽지출강보조금 등 실제 이동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유형은 지원하지 않음

[예술강사의 급식비 지급 관련 세부유형]

① 일반적인 급식비

A강사 (경기 예술강사)/3월 수업 (경기1시수)/3월 출강결과 등록(정석)

급식비 지급 지역	급식비 대상월	급식비	급식비 지급일
경기	3월	70,000원	4월 13일

② 2개 지역 이상 출강 강사(출강승인 시수가 많은 지역에서 지급)

B강사 (경기 예술강사)/3월 수업 (경기 1시수, 서울 3시수)/3월 출강결과 일괄등록

급식비 지급 지역	급식비 대상월	급식비	급식비 지급일
서울	3월	70,000원	4월 13일

③ 출강결과 일괄등록 강사(수업월 급식비 일괄지급)

C강사 (경기 예술강사)/3월 수업 (경기 1시수) 4월수업 (경기 1시수)/4월 출강결과 일괄등록

급식비 지급 지역	급식비 대상월	급식비	급식비 지급일
서울	3월,4월	140,000원 (70,000x2개월)	5월 13일

4) 장애인 출강 보조금

- 장애인 등록증 등 소정의 양식 계약 시 진흥원에 제출(장애인 보조금 지급신청서,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 등록증사본)
- ㅇ 장애인강사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및 출강편의를 위해 출강일당 10,000원(1일당) 지급

5) 도서벽지 출강 보조금

- o 「도서벽지교육진흥법」대상 도서벽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도서벽지수당 추가 지급
- ㅇ 도서벽지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도서벽지수당 10,000원(1시수당)이 추가 지급

6) 출강학교 사전방문 보조금

- 대면으로 진행 시, 배치 받은 학교에 최초 출강 전 사전방문하여, 학교 담당교사와 연간 교육 계획을 협의하고 교육현장을 둘러본 후 사전방문보고서 작성
- 이 비대면 진행 시, 온라인 또는 유선상으로 연간교육계획 및 학교특이사항 공유 후 온라인으로 사전방문보고서 작성
- ㅇ 보조금액 : 1개교 당 43,000원 지급(비대면 진행 시 지급 불가)
- 신청방법: 사전 방문일로부터 1주 이내 사전방문 보고서 1부 작성후 운영기관으로 제출 (담당교사의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
- o 제출방법: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메일 제출 (skart@sungkyul.ac.kr)
 - ※ 이메일 제출 시 스캔하여 발송, 팩스 불가

7) 근로자의 날 수당

- ㅇ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일 : 5월 중 산정 → 6월 급여에 포함
- 근로자의 날 수당은 크게 "근로자의 날 당일 출강하지 않은 경우"와"당일 출강 경우" 두 유형으로 분류되며, 예술강사 개인별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 ※ 단, 5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강사 또는 최초 출강일이 5월1일 이후인 강사는 적용하지 않음
- ㅇ 근로자의 날 당일 출강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

-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날 출강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 ex) 계약시수 300시수, 첫출강일 일 2020년 4월 1일인 예술강사의 경우

- o 근로자의 날 당일 출강한 경우 (가산근로수당)
- 근로자의 날 당일 출강한 경우 가산임금 추가지급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근로자의 날 가산근로수당 지급의 예시
 ex) 계약시수 300시수, 첫출강일 일 2020년 4월 1일인 예술강사가 근로자의날 4시수 출강
 1일 통상임금(69000원)+(43,000원x0.5(가산)x4시수)+3,226원(급식비 1일분)=약 158,300원
- 8) 건강진단비용
 - o 1인당 최대 검사비용 46,510원 한도 내 지원 (21년 경기지역 건강검진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 모든 예술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건강진단)에 의거, 운영기관(사용자)이 예술강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할 의무가 있음

9) 예술강사 3대 보험 적용

ㅇ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 보험 요율은 매년 국가 정책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신고금액(월평균보수액)으로 매월 동일하게 납부되므로 매월 강사비가 변동되어도 공제액은 동일
- * 계약기간 중 특정달에 출강일 수가 없어 강사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출강결과 미등록으로 인하여 강사비가 발생하지 않는 달의 경우 해당월은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익월 강사비 지급시 이전달의 보험료까지 공제

□ 강사비 지급기준 및 절차

절 차	대 상	내 용	기 간
① 출강결과 등록	예술강사	예술강사 매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출강결과 등록	
② 출강 및 근태확인	학교 담당교사	예술강사 출강결과 및 근태확인 후 출강확인	다음달 5일까지
③ 최종승인	운영기관	출강결과 및 근태등록건에 대해 최종승인	다음달 6일
④ 강사료 및 기타비용 지급	운영기관	예술강사의 출강결과 등록에 따른 강사료 지급 (보험료 세금 공제후)	다음달 13일

※ 유의사항

- 예술강사 출강결과 등록기간 내(매월말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영우, 해당 월의 강사료는 다음 달로 이뤄 지급됩니다. (해당 월말인 23:59 등록기준)
- 12월(마지막달 출강) 출강결과 미등록시 강사료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강결과를 12월 31일 이내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말일까지 출강결과 등록 및 수정을 완료한건에 강사료가 책정됨에 따라 월별 출강결과 등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관 출강확인이 완료되면 출강결과 수정이 어렵습니다. 출강결과 등록 전 출강일, 출강 시수, 수업대상, 수업내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강하지 않은 수업의 출강결과를 등록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허위 등록으로 처리되어 강사료 환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관리 매뉴얼

□ 강사료 지급 절차



□ 유의사항

- o 예술강사 출강결과 등록이 기간(매월 말일까지)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강사료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업월 당월 말일까지 출강결과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월 3일 이후에는 출강결과 등록이 제한됩니다.
- 특히 **출강결과 등록은 시스템에 입력된 계약기간 중에만 가능**하므로, 마지막 출강월의 출강결과는 계약기간 말일 이전에 반드시 등록 바랍니다.
- 출강결과 등록은 제출하신 '월별 출강 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확정된 월별 출강시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해당 시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출강 결과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오영기관 출강 승인이 완료되면 출강결과 수정이 어렵습니다. 출강결과 등록 전, 출강일,
 출강 시수 등의 입력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 출강하지 않은 수업의 출강결과를 등록하여 강사료를 지급받은 경우, 허위등록으로 처리되어 강사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로그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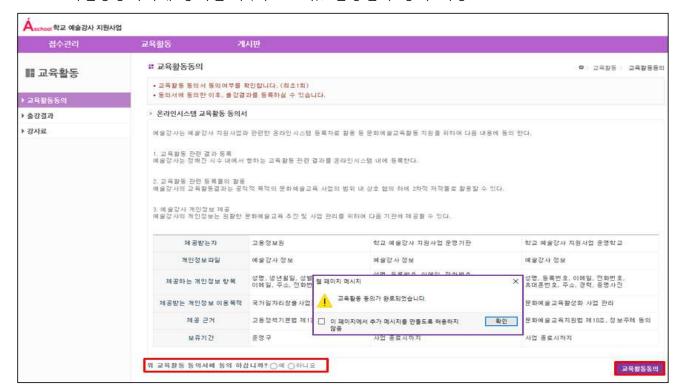


2) [메인페이지] - [교육활동] 메뉴 클릭



3) [교육활동] - [교육활동동의] 메뉴 클릭

※ 교육활동동의서에 동의한 후(최초 1회), 출강결과 등록 가능



4) 교육활동동의서 동의 여부 확인



5) 출강결과 등록

- ㅇ 출강결과는 강사비 책정 등을 위해 반드시 수업일 및 수업유형을 구분하여 등록
- 동일한 수업일에 출강 유형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운영기관에서 출강결과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출강결과 세부내용(수업유형, 수업일, 수업주제, 수업내용 등) 작성 후, '등록' 버튼 클릭
- 출강결과 내용의 중복 등록(수업일, 교시 등)은 불가합니다.
- 출강에 대한 '결과'를 등록하는 메뉴임에 따라, 실제 수업한 건에 한하여 출강결과 등록이 가능하며, 수업 예정인 건에 대한 출강결과 등록은 불가합니다. (※ 수업 예정 일자 선택 불가)
- ※ 사진, 그림, 표, 일부 특수문자는 사용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 ", ', ', <, >, &, /, \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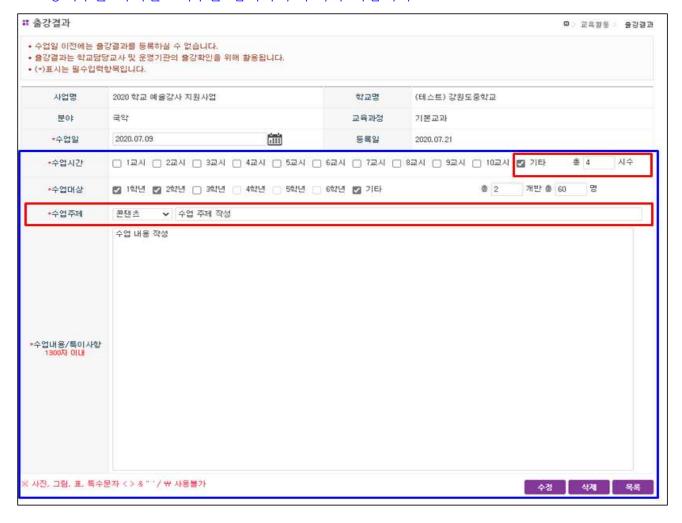


- 수업유형은 [실시간], [콘텐츠], [오프라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 [기타콘텐츠] 유형은 2020년 코로나19 대책방안에 따른 시수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던 유형으로 2021년 출강결과 등록 시에는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원격수업에 따른 수업유형별 출강결과 등록방법]

구분	수업 유형	출강결과 등록학교	출강결과 등록시수
1	실시간	배치학교	실제 수업 시간
2	콘텐츠	배치학교	1차시당 4시수
3	오프라인	배치학교	실제 수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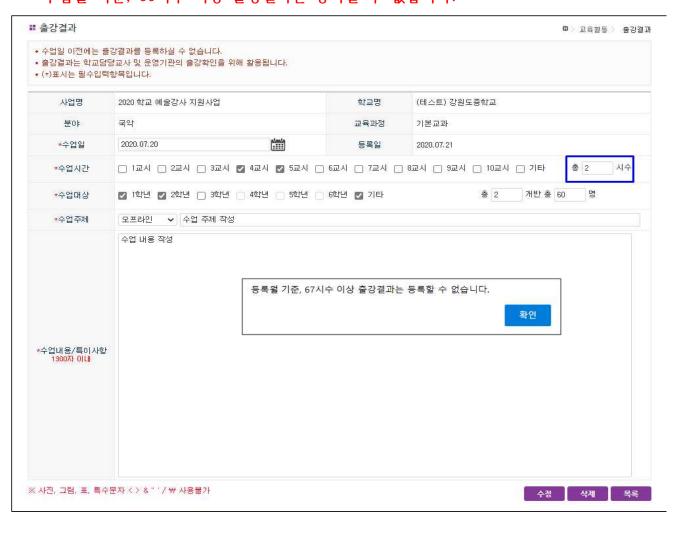
- ※ 운영학교에 출근하여 이뤄지는 수업 및 업무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등록
-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수업은 [실시간] 유형으로 등록
- ※ 수업유형별 중복 등록은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업유형별 별도의 출강결과 등록 필요
- ※ 콘텐츠 수업일은 운영학교 대상 콘텐츠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 [콘텐츠] 유형으로 출강결과를 등록하는 경우, 수업시간은 '기타' 항목 체크, 총시수는 차시별 4시수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한 출강결과의 수업유형은 수업유형과 수업주제가 병합되어 [출강결과] 탭의 '수업주제' 란에 표기됩니다. ※ [오프라인] 수업은 별도 표기 없음



- 온라인시스템에서 출강결과는 수업월 기준으로 59시수까지 등록 가능하며 해당 수업월 당월 말일까지 반드시 출강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 수업월 기준, 60시수 이상 출강결과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6) 중간협의 등록
 - o 학교에 배치된 시수 중 50% 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교육활동 현황을 중간점검·보완하는 절차로, 분야·교육과정별 배치시수 중 1시수를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
- ※ 중간협의는 연간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권장사항이며,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간 논의 후,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 (*배치시수 내 1시수 활용)
- ※ 해당(중간협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전체 배치시수를 수업에 활용 가능
- ㅇ 중간협의 추진절차



ㅇ 중간협의 등록 방법 : 온라인시스템 출강결과(오프라인)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① 수업시간: '기타' 체크에 따른 수업시수 1시수 입력
- ② 수업유형 : 오프라인 수업 ③ 주제 : '중간협의'명시
- ④ 수업내용 : 수업 및 중간협의 결과 작성
-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업과 중간협의를 같은 일자에 진행한 경우, 수업 및 중간협의의 주제, 수업 및 중간협의 내용 등을 하나의 출강결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 수업시간 항목에 수업 시간(교시)과 '기타'를 중복 체크하여 중간협의 표기

- 7) 출강결과 수정 및 삭제
- 등록한 출강결과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수정' 버튼 클릭
- 담당교사 및 운영기관의 출강확인이 완료된 출강결과는 수정 및 삭제 불가
- ※ 월 말일까지 출강결과 등록 및 수정을 최종 완료해야 해당 월의 강사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월별 출강결과 등록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내용 작성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 해당 출강결과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삭제' 버튼 클릭 (※ 삭제 이후 복구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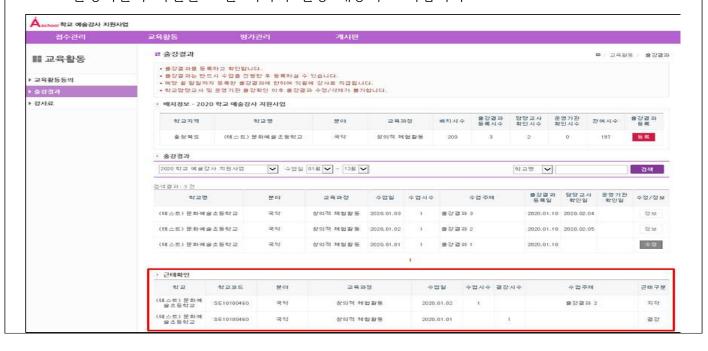


- 8) 출강결과 확인 내역 및 근태 내역 확인
 - ㅇ [교육활동] [출강결과] 메뉴 클릭
 - 담당교사 및 운영기관의 출강확인 현황 확인 가능



ㅇ 근태 확인

- 담당교사가 등록하고, 운영기관이 최종 확인한 근태 내역 확인
- * 지각 및 결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각 및 결강이 예상될 경우, 운영기관과 담당교사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예술강사-학교-운영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수업일을 변경하여 보강을 계획한 경우,'수업일 변경'으로 처리하여 결강시수에서 제외
- ※ 이외 온라인시스템의 근태확인란에는 운영기관 및 담당교사와의 사전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기관이 확인한 모든 지각과 결강 내용이 표기됩니다.



9) 강사료 확인

- ㅇ [교육활동] [강사료] 메뉴 클릭
- 월별 출강결과 등록 및 운영기관 출강확인에 따른 강사료 현황 조회 가능
- ※ 운영기관 출강확인이 완료된 출강결과에 한하여 강사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콘텐츠] 유형만 등록한 수업일의 교통비와, [콘텐츠] 유형에 등록된 출강시수의 도서벽지수당은 강사료에서 제외됩니다.



5. 예술강사 노무 관련 안내

1) 출산전·후휴가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예술강사에 대하여 90일(다태아 기준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제74조)

구 분		1	내 용				
휴가기간	- 90일(다태아 1	[20일]					
휴가신청	- 휴가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선발지역 운영기관에 신청 ※ 대체강사 투입 등 후속진행일정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가급적 일정 준수						
보장내용		면속 90일(다태아 기· ((다태아 60일) 이상					
工 0 刊 0	※ 90일 활용 예시	출산 전 44일 이하	출산일 1일	출산 후 45일 이상			
참고사항	분은 고용센터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총 90일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장에서, 나머지 30일 분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함. 단, 고용센터 지급분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됨					

[※] 단, 상기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하며, 180일 미만 강사의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60일분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2) 육아휴직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구분	내용
휴가기간	- 1년 이내 (자녀 1명당)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선발지역 운영기관에 신청 ※ 대체강사 투입 등 후속진행일정 고려 및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일정 미준수 시 휴직 개시 예정일 조정 가능
휴가신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장내용	- 자녀 1명당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해당되지 않음
참고사항	-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일괄 지급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됨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고용센터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기관에서 지급 의무 없음

3)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가로, 1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구 분	내 용
휴가기간	- 10일[유급]
휴가신청	- 선발지역 운영기관에 신청
보장내용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 - 1회 분할사용 허용
참고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10일 전일 사업장에서 지급함

* 상기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하며, 180일 미만 강사의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10일 분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4) 건강진단

- ㅇ「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2조, 제133조에 따라 예술강사 대상 일반 건강진단 실시
- ㅇ 1인당 최대 검사비용 46,510원 한도 내 지원

*건강진단 계획 수립 및 공유		건강진단 대상자 및 계획 확인		**검진기관 선택 및 계약체결		건강진단 실시 안내	
운영기관		교육진흥원		운영기관		운영기관	
대상자 파악 및 계획 수립 후 교육진흥원 대상 공유		지역별 추진계획 확인		지역별 건강진단 병원 지정		예술강사 대상 안내	
	,				-		
건강진단 시행		미실시자 대상 추가 안내 및 독려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제출		건강진단 수검완료 명단 및 확인서 공유	
예술강사	•	운영기관	▶	예술강사	•	운영기관	
건강진단 시행		미실시자 추가 안내 및 독려, 2차 검진 대상자 파악		운영기관 대상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제출		교육진흥원 대상 공유	

※ 모든 예술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건강진단)에 의거, 운영기관(사용자)이 예술강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할 의무가 있음

4) 예술강사 활동포기 및 사직

- ㅇ 예술강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활동포기 및 사직
 - 근로계약 체결 전 사직 희망자 : [채용 전 활동 포기서] 제출
 - 근로계약 체결 후 사직 희망자 : [강사활동 중도 포기(사직) 신청서] 제출
 - 근로계약 체결 후 배치시수 포기 희망자 : [배치시수 포기 신청서] 제출

6. 예술강사 증명서 발급

- ※ 증명서 발급 신청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강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희망하는 예술강사는 분야 및 연도별 발급기관을 필히 확인 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발급하는 대상 연도에 한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 건은 활동연도의 소속기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발급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별 신청 방식 및 신청서 양식 등 상이할 수 있음)

□ 발급기관 확인 ※ 경기지역의 경우,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발급 문의

TICE		[국9	박 외 7개 분	분야]		[국악분야]	
지역	2005~2009	2010	2011	2012~2020	2021~	2005~2020	2021~
서울		운영	기관				
부산		교육진흥원	운영기관	Ţ			
대구		교육진흥원	운영기관				
인천		교육진흥원	운영기관				
광주		운영	기관				
대전		교육진흥원	운영기관				
울산		교육전	민흥원	1			
경기	-071701	교육진흥원	운영기관	해당지역	707170	해당지역	- 0 TI + 0
강원	교육신응원	교육진흥원 운영기관 운영기관	교육진흥원	운영기관	교육진흥원		
충북		교육전	· - - - - - - - - - - - - - - - - - - -				
충남/세종		운영	기관	1			
전북		교육진흥원 교육진흥원 운영기관					
전남			1				
경북		교육전	흥원				
경남		운영	기관				
제주		운영	기관				

※ 유의사항

- 분야/연도별 발급기관을 필히 확인 후 해당 기관(계약 체결 기관)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관이 '교육진흥원'으로 구분된 활동연도에 한하여 교육진흥원에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 연도별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1600-0144, 내선 1번)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제출

선발지역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광주/대전/충북/충남/세종/전북/전남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제출처	aschool1@arte.or.kr	aschool2@arte.or.kr	aschool3@arte.or.kr

- ※ <u>제출처의 경우, 선발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희망 발급연도가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u> 연도의 선발지역을 기준으로 제출처를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증명서 발급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3~7일 소요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팩스 및 메일 수령방법 : 업무일 기준 약 3일 소요
 - · 우편 수령방법 : 업무일 기준 약 7일 소요
- 신청서 하단의 서명은 필수사항이며, 자필 서명 후 스캔 파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출처는 교육진흥원이 직접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신청 창구로서, 분야/연도별 발급기관을 필히 확인하신 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발급 건에 관한 신청서'만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 (1600-0144, 내선 1번)
- * 강의경력증명서 신청서 양식, 재직증명서 신청서 양식, 원천징수영수증 신청서 양식 등은 "관련 서식"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술강사 교육활동 지원

- 1) 예술강사 의무연수
- ㅇ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속적 확산세로 인한 집체교육 불가로 전면 온라인 추진
- ㅇ (법정의무교육) 운영기관별 계획 수립 후 온라인 강의 제공
- (교과목별 의무연수) 아르떼 아카데미(ArtE Academy)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수강, 교육계획서 작성 실습 전문가 서면 검토

구분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대상
	교과목별 의무연수	학교 교육 이해에 대한	'21년도 신규
필수	112 1121	온라인 강의 및 교육자료 제공	선발 예술강사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등)에 대한 온라인 강의 제공	'21년도 선발
선택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육	비대면 교육 상황에 대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온라인 강의 제공	예술강사 전체

ㅇ 법정의무교육 (필수)

대상 : 2021 경기 8개 분야 예술강사

일정 : 2021년 4월~

연번	구분	교과목	추진 목적
1	4대 폭력	성희롱, 성폭력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대비,
		성매매, 가정폭력	4대 폭력 관련 예방교육 실시

ㅇ 신규예술강사 교과목별 의무연수 (필수)

대상 : 2021년 경기 8개분야 예술강사 신규예술강사

일정 : 2021년 2월 8일 ~ 2월 28일

- 진흥원 교육연수센터 온라인 아르떼 아카데미 연계 및 지역운영기관 통한 운영
- * 학교 교육 현장의 이해(4시간), 학교 교육 대상의 이해(4시간), 교사·강사 간 협력수업의 이해(4시간), 과목별 추진방식 상이함 , 교육계획서 작성실습 (전문가 피드백 제공)
- 2) 예술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ㅇ 추진대상 : 2021년 경기 8개 분야 활동 예술강사 중 희망자에 한함

o 추진일정 : 2021년 4월 ~ 12월, 연중 6회차 진행 예정(추후 공지)

ㅇ 추진방법 : 운영기관 홈페이지(www.skart.or.kr)를 통한 온라인 사전 접수

ㅇ 추진내용 :

-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양질의 원격수업 제공을 위한 비대면 학교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향상 추진

- 사회적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유형이 지속됨을 고려하여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각 분야가 갖는 고유한 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 양질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제공

3) 예술강사 수업 연구모임

- ㅇ 추진대상 : 2021년 경기 8개 분야 활동 예술강사 중 희망자에 한함
- o 추진일정 : 2021년 4월 ~ 12월, 연중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진행 예정(추후 공지)
- ㅇ 추진방법 : 운영기관 홈페이지(www.skart.or.kr)를 통한 온라인 사전 접수
- ㅇ 추진내용 :
- 경기 8개 분야 예술강사 연구모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교수역량 및 예술교육 전문성 강화
- 교육현장 내 다양한 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분야별 교안 제작 및 실습의 장 제공
-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는 현황을 감안하여 예술강사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연구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8. 예술강사 교육활동 준수 내용

- 예술강사는 배치된 학교와 협의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교육과정과 배치받은
 시수 한도 내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 o 운영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연간 예술강사 활동 중 교육과정·운영시수 변경 및 지각, 조퇴, 결강 등 특이사항 발생 시출강학교 및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 ㅇ 모든 수업은 학교 담당교사와의 협력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o 학교에 배정된 수업시수는 자유학기제, 방과후 수업으로 활용 불가하며, 예술강사의 수업과 무관한 평가 (학업성취, 수행평가등) 및 시험감독, 체험학습, 수학여행, 캠프 등의 학교 행사에는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ㅇ 예술강사 필수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학교 & 예술강사 대상 통합 설명회

공통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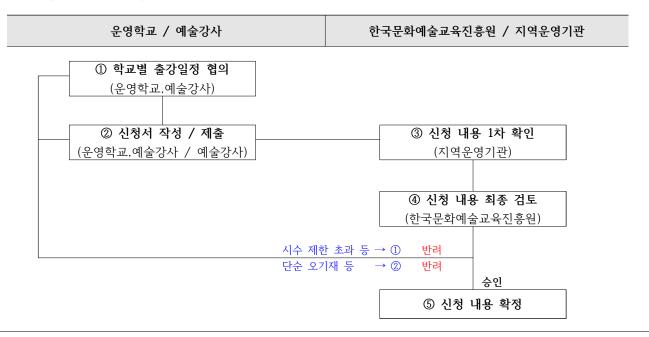
Ⅳ 공통안내

1. 예술강사 시수관리체계 변경 안내

- 1) 예술강사 출강시수 사전 관리 체계 도입
 - o 기존에는 운영학교-예술강사 간 협의된 연간 출강시수를 지역운영기관에 고지한 후 세부 출강 내역은 사후 보고(출강결과 등록) 형태로 관리
 - '21년부터 기존의 <출강시수 약정(변경) 통보서> 를 변경, <u>매월 출강시수에 대해 사전 승인 후</u> 활동하는 <월별 출강 계획서>로 변경
 - 예술강사의 <월별 출강 계획서> 는 기존의 출강시수 약정 통보서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식으로써 고용주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최종 승인 후 그 내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 체결 및 학교 출강 가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ᅔᄁᄔᄁᄀᆝᅠᄃᇋᄼᄱᆡᄾᄁᄔᆡᄾ	사전 승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기관) ▼
출강결과 승인 절차	출강결과 등록(예술강사) ▼	출강결과 등록(예술강사) ▼
	사후 승인(운영학교, 운영기관)	사후 검토 및 승인 (운영학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기관)
관리 범위	연 출강시수(476시수)	연-월별 출강시수(연 476시수, 월 59시수)

* 출강시수 사전 승인 절차도



- 2) 예술강사 필수 제출서류
 - ㅇ 사전방문보고서, 월별 출강 계획서
 - <u>사전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 계획서' 모두 필수제출 서류</u>로서 출강 학교별 각 1부씩 지역운영기관에 제출 필요

(예시) 출강학교가 세 학교(A,B,C)인 경우

- ▷ A,B,C 출강학교별로 각각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 계획서' 제출 필요
- ※ 단, 최초 체결 이후 출강일정이 변경되어 학교별, 월별 출강시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학교가 아닌 해당 학교의 '월별 출강 계획서'만 다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 비대면 사전방문 시에도 동일하게 협의내용을 작성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사전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 계획서' 제출 시 서명을 통해 협의 내용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서명 포함된 서류 제출 필요

(서명의 형태[이미지 파일, 전자 서명 및 날인, 직접 서명 후 스캔 등] 는 무관)

※ 단, 출강일정 수정의 사유로 '월별 출강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해당 학교의 연 출강 시수에 변경이 없다면 강사의 서명만 기재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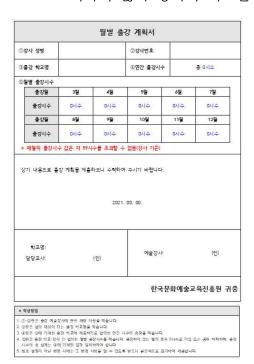
(예시) '월별 출강 계획서' 내 상황별 필요 서명 예시

	치호 하저 시처기	변경 시		
	최초 확정 신청시	연 출강시수 변경 시	월 출강시수만 변경 시	
예술강사 서명				
담당교사 서명			-	

- 3) 시수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협조사항
 - 예술강사의 월별 출강시수는 월 59시수 이내로만 가능하며, <월별 출강 계획서>를 제한시수를 초과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예술강사에게 월별 출강시수에 대해 재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므로 운영학교는 강사의 월별 출강시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출강일정 협의 진행 필요
 - 예술강사의 월별 출강시수는 강사 개인별로 2개 이상의 출강학교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사업 <복지기관 아동 문화예술교육> 출강시수가 모두 합산되어 월 59시수가 관리되므로, 예술강사와 연간 및 월간 출강일정 협의 시 참고 필요
 - 예술강사 → 운영학교 사전방문협의시 예술강사 근로계약 필수서류 "월별 출강 계획서"
 및 "사전방문보고서 작성 협조
 - * 예술강사가 사전방문 시 작성하는 서류는 <월별 출강 계획서> 및 <사전방문보고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모든 예술강사의 근로계약 필수 서류로써, 운영학교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서류 미 제출 시 근로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학교 출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강사의 해당 서류 작성 요청 시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교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된 내용을 예술강사가 작성 후 담당선생님께서는 확인 서명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예술강사가 월별로 등록한 시수가 <u>모든 학교를 합산하여 59시수를 초과</u>하는 경우, 초과된 시수에 대해서는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료 지급이 제한됩니다.
- ※ 반대로 해당 월에 신청서에 기재된 출강시수만큼 출강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수는 결강으로 처리되며, 학교측과 임의의 사후 보강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운영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결손시수에 대한 비용은 운영학교 측에서 부담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ex : 특정일 수업이 학교 행사 등으로 취소되었으나 예술강사 측에 해당 사항을 사전 고지하지 않아 강사가 학교를 출강했음에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귀가한 경우 등)



강사번호		강사명		분야	
학교명		수해학급 수/학생 수	1/	협의	□ 대연 / □ 비대연
1. 교육활동	제반사항	협의			
7 2			협의 내용		
예술강사의 연 교육 개요		가사는 분인의 수업 방향성 이 공유하며 주시기 바랍니		토대로 연	간 교육활동 내용에 대히
예술강사-담당 사 간 합의된	» 메슬길	2사와 담당교사 간 합의된	연간 교육방향	25 8 I (등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
연간 교육방학 및 목표) H	합니다.			
	* 28	합니다. 만르는 학교 예술장사 자원 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반호에서 기	시원할 수 있는 지원사항
및 목표 교육기자재 9 대기 장소 등	* 운영역 항 이 대 * 운타역	박교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입 운영 방안	NT A	
및 목표 교육기자재 9 대기 장소 등 학교 지원 사업	* 운영역 항 이 대 * 운타역	받고는 학교 예술값사 지원 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간 및 콘텐츠 지원 관련 수	입 운영 방안	NT A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
및 목표 교육기자재 9 대기 장소 등 하고 지원 사1	# # 문학 이 대 # 문학 반 시	한교 연습장사 지원 한 기계하여 교시기 바랍니 한 및 콘텐츠 지원 관련 수 항을 작성하여 교시기 바랍 성 명	(다. 살 운영 방안 합니다. 원활	등과 같이 서 명 한 교육활 박으로 협3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

- 월별출강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u>배치된 학교 별로 운영기관에 제출 필수</u>(3개 학교 배치 ▶ 3개 작성 제출)
- 2) 예술강사 서명 및 학교 담당교사 서명, 방문일시 작성 필수
- 3) 연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추가시수나 시수반납이 있는 경우, 새 양식에 작성 후 담당교사, 예술강사 서명 필수
- 배치한 시수 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 양식에 작성하여 말일까지 예술강사 서명만 작성하여 제출

[ex) 서류제출 : 3월 10시수 / 4월 10시수 → (운영계획변동): 3월 8시수 / 4월 12시수 이러한 경우, 3월 말까지 새 양식에 변동내용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사전방문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u>배치된 학교 별로 운영기관에 제출 필수</u>(3개 학교 배치 ▶ 3개 작성 제출)
- 2) <u>예술강사 서명 및 학교 담당교사 서명,</u> 방문일시 작성 필수
- 3) 사전방문을 대면으로 진행할 시 협의에 "대면" 체크,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진행할 시 "비대면" 체크
- 4) 학교-강사 상호 교육활동 제반사항 협의 내용이 상세히 확인될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 필요

2. 협력수업 안내

- 1) 협력수업의 정의
 -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원 교과(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선택과목, 토요동아리, 돌봄교실)의 모든 수업은 예술강사-운영학교 담당교사 협력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예술강사의 "예술" 전문성과 담당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토대로 상호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
 - 해당 수업의 최종 책임자는 담당교사이므로 예술강사 수업 참여 필수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학교 관계자의 동석이 원칙임)
 - ㅇ 협력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사항은 운영학교의 귀책 사유

○ 협력수업의 의미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협력수업은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예술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임. 담당교사-예술강사 상호 협력이란 서로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의미있는 수업, 더 나아가 학생들이 기대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 위함

○ 협력수업의 과정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강사 간 협의는 사전협의(첫만남)-중간협의(대화와 조율)-사후협의(성찰과 피드백)의 순환적인 성격을 지님. 원활한 협력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와 강사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업에 함께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협력수업의 기대효과

담당교사와 예술강사의 협업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여 학생들에게 예술을 좀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함. 학생들이 예술적인 방식의 소통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며, 타인의 내면도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2) 협력수업의 방식과 단계
 - ㅇ 협력수업은 담당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 의지, 교육적 경험, 학교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단계로 진행됨

- 연속선상의 협력수업 단계 -

수업 효율성 증진

- 예술강사의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제공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단계)

- · 수업 내용 분담
- · 학습자 분할 지도
- · 상호 보완

공동의 수업 운영

- 교사와 강사가 보다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수업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 (수업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생 지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
- · 수업 내용 분담
- · 학습자 분할 지도
- 상호 보완

새로운 수업 설계

- 교사와 강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 (협력수업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적합한 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
- · 수업 지도안 공동 개발
- · 공동의 교수학습 활동
- · 수업 성찰, 개선

3) 분야별 협력수업의 특성

- 예술 매체의 특성에 기인하여 <u>각 분야에 사용하는 표현 방식에 따라 교육적으로 활용되는</u>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
- o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수업을 통해 담당교사는 다른 수업과 연계하거나 추수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완성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o 분야별 협력수업의 특성을 살린 예술교육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산발적인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지속성 있는 미적 경험을 할 수 있음**

※ 분야별 협력수업의 특성

분 야	교육과정 구분	협력수업의 특성
국악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수업 주제 및 활동 영역에 따른 수업 설계 및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기자재 및 교수학습 관련 사전 논의 개념 중심의 학습은 교사가 이론 중심으로 이끌어감 실기 중심의 학습은 예술강사의 실기 지도를 바탕으로 함
연극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연극 교육의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사전 계획에 따른 수업 내 역할 분담이 가능함 학생중심 공동 창작의 경우, 모둠별 학습활동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협력이 가능함
영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전문적 지도를 요하는 창작 영역의 경우 제작 단계부터 담당교사, 예술강사가 나누어 순회지도를 분담하는 형태의 협력이 필요함 적용 영역의 경우 주제에 따라 현장 교사의 전공 및 관심사와 연결될 때 협력수업으로 개발이 가능함
무용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학생 각각의 성품이나 태도가 표현 활동의 출발점이 되므로 교사와 예술강사의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함 학생들의 표현을 돕고 표현, 감상, 소통, 공감이 연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수업을 설계함
만화 애니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수업에 활용할 기법, 수업 구성, 준비물, 활용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교사와 예술강사의 원활한 개발 지도를 위해 학습자 구성 및 지도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가 필요함
공예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교육대상자의 인지적, 조작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공유함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협력수업의 유형, 비중 등을 협의함
사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 야외 현장학습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및 안전조치 등을 검토함 · 사진기 활용, 기자재 준비, 수업 준비 및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함
디자인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수업제재 설정에 있어 예술강사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수업준비 및 지원사항을 협의함 다양한 수업 전개,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3. 원격수업 가이드

- □ 2021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동 운영 방식
 - o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하에 대면 교육 실행
 - 지역, 공간, 대상 특성상 대면교육이 어렵거나 관련 수요가 있을 경우 학교-강사 간 혐의*를 통한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실행
 - 원격 수업은 학습 내실화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기본으로 운영
 - ※ 단, 현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학교-강사 간 협의를 통한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 진행

구	분	운영 형태	운영방안	시수
등교 (대면) 수업	① 실시간	• 대면 방식의 기존 예술강사 교육활동 추진	※ 방역지침 준수하여 시행	1시수
	②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한 학교에 예술강사가 출강, 교육활동 추진	•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 시간 확보	1시수
원격 수업	③ 콘텐츠 제작· 활용 수업	• 학교의 수요에 맞춰 예술 강사가 교육 콘텐츠를 제작, 학교에 공급	 콘텐츠 분량 초등 최소 10분이상 중등 최소 15분이상 콘텐츠 유형 영상강의자료 PPT활용자료(음성녹음 포함) 활동 및 활용방안 제시 권장 	4시수 (1차시 기준)

- ①, ②, ③은 단독 혹은 병행/연계 가능하나, <u>등교 및 (원격)실시간 쌍방향 수업 우선</u>
- ③의 경우, 대면교육 1차시 수업분량을 고려한 기획·구성이 되어야하며, 학교에 제출 시 1차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운영 방안 안내 필요(예:15분 영상+활동지 등)
- -*수업의 운영 방식, 내용, 분량은 '학교 담당교사-예술강사'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확정 필요

□ 기타사항

- ㅇ (콘텐츠 저작이용 관련)학교-강사 간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후 수업 적용
- ㅇ (콘텐츠 질 관리) 교육진흥원, 운영기관에서 모니터링 진행

*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시수소화방안으로 운영되었던 '수업과 무관한 콘텐츠 제출(학교/운영기관)' 방식은 원격수업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 안내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1) 배경 및 시행방향

□ 추진배경

- o 코로나19 감염병 등 유사 상황에 대비한 문화예술교육 학습 공백·격차 최소화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책 마련
- o 예술강사의 원활한 원격 수업 진행을 돕고, 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가이드' 마련

·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 2항 및 제24조 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 4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학교의 정규수업

□ 시행 방향

- ㅇ 코로나 19 지속으로 학교 현장 원격수업 수요 충족 및 교육 내실화
- 원격수업가이드 마련을 통한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속성 확보

2) 예술강사 원격수업의 개념과 유형

- □ 원격수업의 개념
 -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써,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과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 ※ 원격수업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정규수업
 - ※ 등교수업 : 학교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오프라인 정규수업

□ 원격수업의 유형

-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 동시적 원격수업의 형태
- ②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 비동시적 원격수업의 형태

구 분	운영 형태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예술강사가 학교에 출강,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예술강사·학생 간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시행 학교는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 및 기자재 준비 필요 			
② 콘텐츠 제작· 활용 수업	 운영학교-예술강사 간 협의에 따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 학교 수요에 맞춰 예술강사는 계획된 교육활동의 흐름을 고려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 학교교사는 공급받은 콘텐츠로 학생과 수업 			

- (기본방향)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별 **단위수업시간**¹⁾을 고려한 수업을 구성하여 학습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
- (운영방향) '21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원격수업 운영 방침2)에 따라, 학생의 학습격차 최소화 및 학습 내실화를 위하여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기본으로 운영
- 단, 현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학교-강사 간 협의를 통한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 진행
- 예술강사는 학교와의 협의를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원격수업 유형 결합 등을 통해 효과적 예술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o 예술강사의 원격수업은 학교(수요)와 예술강사(공급) 간 합의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므로, 학교의 온라인 교육 기반 마련 및 예술강사의 원격수업 추진 의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3) 원격수업의 운영과 기준
- □ 원격수업의 운영
-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원격으로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학교에 예술강사가 출강하여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교육활동 추진
- (수업분량) 학교급별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수업량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운영
- (수업진행) 운영학교는 실시간 원격수업이 가능한 시스템(온라인플랫폼 등) 및 기자재 등 준비
- (학교교사) 실시간 쌍뱡향 수업이 가능한 공공플랫폼(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민간플랫폼 (Zoom등))에서 예술강사가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예술강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별 쌍방향 소통 및 피드백 제공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②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 원격으로의 실시간 수업이 불가능할 시, 예술강사가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학교에 공급하는 교육활동 추진
 - o (제작기준) 콘텐츠 제공을 통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o 제작분량 : 1차시당 초등 10분 이상, 중등(중·고등학교) 15분 이상

ㅇ 제작구성 : 콘텐츠 시청 시간과 학생의 자기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총 학습시간이

교급별 단위수업시간이 되도록 구성

- 블랜디드(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방식 고려, 콘텐츠 학습(시청) 후 자기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 자료(활동지 등)를 포함하여 제작 권장
- 제작 분량 기준을 참고하되, 대면교육 1차시 수업량을 고려한 기획·구성이 되어야 하며, 학교교사가 콘텐츠를 토대로 1차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방안 안내
- 1) 등교 수업 단위수업시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 2)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교육부/'21.1.28.) 및 각 시도교육청 원격수업 운영 기준 자료 등 참고

- * 1차시 구성 예시(40분) : 동영상 강의 10분 이상 + 활동자료를 통한 학생별 자기활동진행 20분 내외
- (제작형태) 학교-강사 간 협의에 따라 ①영상강의자료, ②PPT활용자료(음성포함)을 활용하여 제작

[유의사항]

- o 수업의 세부 방식, 내용, 분량은 '학교 담당교사-예술강사' 상호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o 학교교사와 예술강사는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에서도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예술강사는 콘텐츠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타 콘텐츠 사용(복제)임이 밝혀질 경우, 해당 콘텐츠가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활용 범위) 예술강사는 <u>해당 학교 전용 콘텐츠 제작이 원칙</u>이며, 운영학교는 해당 학급 및 학생을 위한 수업자료로만 활용 가능
- (학교교사) 해당 콘텐츠를 여러 학급에 중복 활용 가능하나, **접수 당시 신청하지 않은** 학급까지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
- (예술강사) 해당 학교 전용 콘텐츠 제작 원칙에 따라 여러 학교에 동일한 콘텐츠 중복 제공 불가 및 전년도와 동일한 콘텐츠 활용 불가
- ※ 콘텐츠자료 내 해당 학교명, 교육일자 기입 등 구별표시 권장
- (수업연계) 원격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사-강사 간 긴밀한 협력 필요
- (학교교사) 학습자의 학습연계를 위해 콘텐츠 활용 전·후 관련 필요 내용을 예술강사에게 공유
- (예술강사) 학습자 입장에서 차시별 콘텐츠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전 차시 수업 학습결과를 고려한 콘텐츠 제작. 또한 필요에 따라 대면 및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연계하여 해당 콘텐츠 학습 효과 도모
- □ 원격수업의 운영에 따른 구성
 - o 학교와 강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 ②콘텐츠 제작·활용 수업 유형을 유연하게 활용, 기존 방식인 ③대면수업과 결합하여 구성 가능

방식	유형	시 수	내용
원격	① 실시간 쌍방향	1시수	실시간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한 학교에 예술강사가 출강, 교육활동 추진
수업	② 콘텐츠 제작·활용 (비 실시간)	4시수 (1차시 기준)	학교의 수요에 맞춰 예술강사가 교육 콘텐츠를 제작, 학교에 공급
등교 수업	③ 대면수업 (기존)	1시수	대면 방식의 기존 예술강사 교육활동 추진

* 원격수업 일정 설계 시, ①+③, ②+③, ①+② 또는 ①+②+③등의 유형 결합 가능

※ 유형 적용 예시 : 200시수 선정학교 기준

구분	원격수업 방식	대면수업 방식		합계시수
①+③ 유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40시수	등교수업 160시수	* 대면수업의 경우	200시수
2+3	교육 콘텐츠 10차시 분량 (40시수 분량)	등교수업 160시수	수혜학급 확대 또는 교육과정 확대 형태로	200시수
유형	교육 콘텐츠 20차시 분 (80시수 분량)	등교수업 120시수	추가 조정 가능	200시수

- □ 원격수업 출강시수 인정 기준
 -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대면수업 출강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1시수당 43천원의 강사비 지급
 - ※ 여러 학급이 동시 참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시수로 인정

[유의사항]

- ㅇ 예술강사 출강에 따른 강사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 o 따라서 운영학교는 각 학급당 1개 시수 운영을 전제로 운영계획 수립 시 예술강사 결손시수 최소화를 고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각 학급마다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제 학교 출강을 전제로 하는 유형이나, 학교 내 원격수업 기자재 부재 등에 따라 학교 외 장소(예술강사 자택 등)에서의 출강행위가 학교-강사 상호간 합의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시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 : 콘텐츠 제작 소요시간을 고려, 1차시 콘텐츠는 4시수 출강 활동으로 인정되며 4시수 분인 172천원의 강사료 지급
- ※ 콘텐츠가 활용되는 학급의 수와 무관하게 1차시 분 콘텐츠당 4시수 인정
 (1차시 콘텐츠는 학교 내 본 사업에 참여하고, 동일한 내용이 요구되는 학급에 중복 사용 가능)

[유의사항]

-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에 따른 예술강사의 과업 수행 범위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까지로 제한되며, 이후의 사정은 인정되는 출강시수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학생 평가 및 출석 관리 등 교사의 역할에 해당되는 관리, 혹은 해당 수업과 무관한 관리는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에 소진되는 '4시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은 학교 교사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의 협조가

[참고사항]

매우 중요함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제공 이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학교교사가 아닌 <u>예술강사의 '추가활동'이 이루어질 경우,</u>** 실시간 쌍방향 또는 대면수업 유형으로 활동 시수에 대한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이 예술강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경우
-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추가적 출강활동이 필요한 경우 고려 가능

□ 급식비 및 기타 수당 기준

- ㅇ (급식비) 원격수업에 의한 출강만 이루어지는 달에도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월정 급식비 지급
- (교통비, 도서벽지출강보조금) 실제 이동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목적임에 따라, ②콘텐츠 제작·활용 유형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 o (장애인출강보조금) 장애인 예술강사의 생활안정을 돕는 취지에서 해당 보조금은 원격수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
- o (기타지원) 출산전후휴가, 근로자의 날, 건강검진, 법정의무교육 등의 권리·의무 또한 원격수업만 진행하는 예술강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운영학교와 예술강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을 고려, **선정된** 시수에서 잔여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수업의 유형별 결합 등 각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
- 운영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게 수업일정을 조정하되, 예술강사가 학교에 배정된 수업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 운영학교는 예술강사 대상 원격수업 준비, 교사대상 연수참여 등을 위한 학교 등교 요청 불가(출강시수로 인정 불가)
- ※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이론 및 실기 지도 등 '강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므로, 학교는 예술강사에게 교육활동(출강)행위 외의 활동을 요구할 수 없음
- ※ 학교-강사 간, 출강 전 사전협의 및 출강기간 중간의 중간협의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계획 협의 필요
- o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운영기관은 사업의 모니터링 및 콘텐츠 시수 확인 등을 위해 예술강사가 제작한 콘텐츠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원격수업 등록 및 승인 절차

추진내용 및 절차			예술강사	운영학교 (담당교사)	운영기관
1	원격수업 추진 여부 확인	학교-예술강사 간 상호 확인	•	•	
2	원격수업 추진 계획 협의	학교-예술강사 간 유형, 일정, 규모, 저작권 관련 등 협의	•	•	
3	협의 내용 알림	예술강사가 운영기관에 고지 (해당내용 약정서 내 반영)	•		
4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제출	(유형 ② 콘텐츠 제작·활용의 경우) 학교와 공동 작성하여 예술강사가 운영기관에 제출	•		
5	출강 활동	실시간 출강 및 콘텐츠 제작·제공	•		
6	출강활동 확인	실시간 출강여부, 제작 콘텐츠 검수		•	
7	출강결과 등록	온라인시스템 출강등록 (aschool.arte.or.kr)	•		
8	출강등록 확인	온라인시스템에서 출강내용 확인 (aschool.arte.or.kr)		•	
9	출강등록 내역 최종 확인	온라인시스템 출강내역 최종 확인 (aschool.arte.or.kr)			•
10	강사비 지급	운영기관이 예술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

□ 출강결과 등록 절차

방식	구 분	온라인시스템 내 절차	
원격	① 실시간 쌍방향	1) [수업유형] 중 [실시간] 선택 2) 기존의 대면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수업시간 및 수업주제, 수업내용 등 작성 3) 출강결과 등록	
변역 수업	② 콘텐츠 제작·활용 (비 실시간)	1) [수업유형] 중 [콘텐츠] 선택 2) [수업시간] '기타'선택, [총시수] 4시수 수기 입력 3) 콘텐츠 주제 및 내용 등 작성 4) 출강결과 등록	
등교 수업	③ 대면수업 1) [수업유형] 중 [오프라인] 선택 (기존) 2) 기존 방식과 동일		

□ 콘텐츠 제출 절차

- ㅇ (제출기한) 예술강사는 해당 수업 일정을 고려한 콘텐츠 제출 필수
- 학교교사의 콘텐츠 활용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예술강사는 수업 일주일 전 (최소 3일전) 까지 제출
- * 콘텐츠 제공 시, 예술강사-학교 간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예술강사는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

□ 근태정보 및 만족도 조사

- o (근태정보) 원격수업도 예술강사의 정규수업이므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근태정보 입력 필요
-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담당교사와 예술강사가 계획한 수업일 및 시간을 기준으로, 대면수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 콘텐츠 제작·활용: 예술강사는 콘텐츠 제작부터 제공까지로 업무 내용이 한정되므로, 모든 수업의 <u>근태 정보는 '정상'으로 입력</u>
- (만족도조사) 대면수업 및 **원격수업의 모든 수업(유형)에 해당**
- 학교교사는 학생이 수업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 안내 필수
- ※ 근태관리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관련 세부 절차 및 내용은 예술강사 교육활동 관리 차원의 별도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 □ 예술강사의 저작콘텐츠 보호
 - ㅇ (기본방향) 예술강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예술강사에게 귀속
 - ㅇ (운영학교 유의사항)
 - 운영학교는 제공받은 **콘텐츠의 저작권이 예술강사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콘텐츠를 활용
 - 운영학교는 제공받은 콘텐츠를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만 활용 가능하며, 예술강사의 동의 없이 재가공 할 수 없음
 - ※ 콘텐츠를 제공받은 학교는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에 명시된 범주 내에서만 콘텐츠 활용 가능
 - 운영학교는 콘텐츠 활용 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공간(플랫폼 등)에 출처'와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임'을 명시하고 수업활용 외 불특정 다수에게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운영학교는 학생에게 콘텐츠 저작물 및 예술강사의 얼굴 등을 다른 공간(사이트 등)에 공유하지 않도록 **저작권 관련 사전 교육 필요**
 - 원격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활용 시, **해당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필수** (접근 제한, 복제방지 등 경고문구 명시 필요)

- □ 저작물 이용 허락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
 - (작성 목적) **학교가 예술강사의 콘텐츠를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이용 범위 및 기간, 내용, 수량 등 정보의 확정
 - 0 (작성 내용)
 - 저작자 표시 : 콘텐츠를 제작한 저작자(예술강사) 의 정보 기입
 - ※ 기입 내용: 저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 저작물 표시: 이용 동의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콘텐츠)의 정보 기입
 - * 기입 내용: 저작물의 제목, 종별(영상저작물), 수량, 저작물 내용 개요 등
 - ㅇ (작성 시점) 콘텐츠 제공일(해당 수업일 3일 이전) 작성 필요
 - (작성 방법) 동의서 총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학교와 예술강사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예술강사는 그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
 - ※ 동의서 제출 방법: 경기 8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sungkyul.ac.kr 로 제출
 - 한 학교에 여러차시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수업일이 확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괄 작성이 가능하나, 수업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콘텐츠는 추후 추가 작성 필요
 - * 기존 동의서 수정, 변경 가능
 - 콘텐츠 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추후 저작권 관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을 유의

[유의사항]

- o 본 동의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 o 예술강사 또는 학교가 원하지 않을 때는 본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동의서의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업 방법(실시간 쌍방향 수업 또는 대면수업)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 콘텐츠 제작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주의사항
- (기본방향) 예술강사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공공저작물 등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필요
- o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주의사항
- (출처표시)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수록매체, 발행일자 등 출처 표시
- (일부분 이용)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필요
- **(초상권 보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저작인격권 보호) 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보호해야 함
- (기술적 조치) 접근제한조치(로그인 절차 부여, 비공개 링크 전송 등) 및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 삽입 필요

ㅇ 요소별 활용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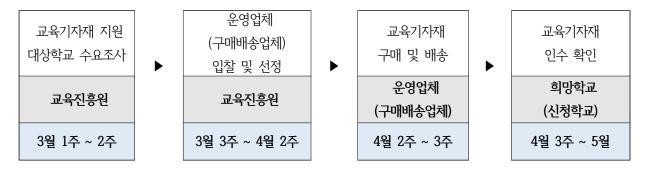
분 류	기타 유의사항
폰트	- 약관상 무료인 폰트를 사용해야 함 - 무료폰트라도 사용 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된 폰트의 이용은 피해야 함 -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파일의 범위 확인 필요(한글, MS오피스 등) - PDF 파일로 변환 시 폰트내장형 설정 지양
이미지	- 이미지의 특성상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자유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만 이용할 것을 권장
영상	-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최소 범위를 이용해야 함 - 동영상의 링크(유튜브 링크 등)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나 다운로드는 불가능
음악	-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최소 범위를 이용해야 함 - 학습 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위 내용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 수업목적이 아니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ㅇ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활용 권장
- (공공저작물 이용) 이용 범위가 넓은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권장 [부록 1] 원격수업 준비 및 실행 길라잡이 - "기타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 내용 참고

4. 교육기자재 지원

- □ 교육기자재 지원 개요
 - ㅇ 추진목적
 - 분야별 교육기자재 지원 기준에 충족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 현장의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수업 운영 및 지속적인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o 선정기준
 - 지원분야 :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 7개 분야
 - 교육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 (이외 교육과정 미지원)
 - ㅇ 지원대상
 - 금년 신규 분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으로 최초 선정된 학교 및 과거 지원된 교육기자재 내용 연수가 8년 경과된 학교
 - 대상학교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대안학교 중 총 1,309개교
 - * 해당 분야 34시수 이상 배치 학교(2021.2.22.(월) 추가배치 1회차까지 기준)
 - ㅇ 지원방식 : 선정된 운영업체(구매배송업체)에서 교육기자재 구매 후 희망학교 일괄 배송
 - ㅇ 추진절차



ㅇ 추진방법

- 지원 대상학교 중 교육기자재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 지원희망신청서 제출 학교)
- 운영학교의 (지원희망신청서) 작성 시 원활한 연간 교육활동을 위해 배치된 예술강사와 사전 혐의 필요
- ※ 국악 분야의 경우, 교육기자재 미 지원
- ※ 사진 분야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강사 개인별로 지급 및 관리
- ※ 교육기자재 1차 지원후 운영학교 변경사항 및 지원 예산 검토 후 2차(하반기) 추가 지원 예정

5. 교육현장 모니터링 안내

- □ 교육 현장 모니터링 개요
 - ㅇ 추진목적
 - 예술강사 원격수업(실시간 쌍방향·콘텐츠)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예술강사 원격수업 관련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 학교 강사 간 교육활동에 관한 협력 및 상호 교류와 소통 등 효과적인 협력수업 진행 방안 제시를 통해 원활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 기반 조성
 -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발생 점검 및 원활한 해결 방안 모색
 - 2021 신규 예술강사 및 유형 변경 예술강사 교육활동 점검
 - 우수 운영학교 및 우수 예술강사의 사례 발굴과 확산
 - o 방문기간 : 2020년 7월 ~ 12월(6개월)
 - ㅇ 방문위원 : 교육전문가 1인, 예술전문가 1인(2인 1조), 운영기관 담당자 1인 등
 - ㅇ 방문위원 자격기준

구 분	교육분야 전문가	예술분야 전문가			
공통 기준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자격 기준에 준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관련 전공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2017 ~ 2020년도 교육 현장 모니터링 위원 참여자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8개 분야 교육자문위원회, 운영협의체 활동 위원으로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파악, 이해하고 있는 자				
자격 기준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전문직(교감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이에 상응하는 경력의 퇴직 5년 이내의 교사 	- 예술강사 교육활동(8개 분야) 영역의 전문 학회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속하거나 활동한 자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ㅇ 선정기준

- 예술강사 원격수업이 실제 진행 중인 운영학교
- 운영학교·예술강사 간 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 교육활동 점검이 필요한 2020 신규 예술강사, 유형 변경 및 지역 이동 예술강사
- 사례 발굴을 위해 적합한 우수 예술강사 및 우수 운영학교
- 교육 현장 방문·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운영학교 등

6. 기획사업 안내

□ 기획사업 무색유취(無色有臭) 예술과의 만남 : 창의·융합 예술교육

ㅇ 추진목적

- 경기지역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한 도서벽지지역 및 원·도심, 문화취약지역 교육대상자 중심으로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팀을 구성하여 참여·체험형 교육 실시
- 경기지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긴급 돌봄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돌봄교실 수요조사를 통한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다양한 장르의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대상자의 진로 방향성을 제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

ㅇ 추진대상

- 경기지역 내 2021년도 초등학교 참여학생 및 8개 분야 예술강사
- ※ 예술강사 6팀 12명, 참여학생 1개교 20명 기준 120명
- ㅇ 진행장소 : 선정된 각 학교 내 수업진행이 가능하며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
- ㅇ 추진내용
- 개별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타 장르와의 협력에 의한 창의·융합적 교안 마련
- 교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대상자의 창의적 결과물을 완성하여 결과발표의 기회 제공

o 추진방법:

순번	추진방법
1	경기지역 초등학교 대상 홍보 및 참여학교 모집
	\bigcirc
2	경기 권역별 3개 지역(북부, 남부, 중부) 참여학교 선정
	Ţ
3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강사 선정
	Ŷ
4	참여학교와 참여강사의 지역 및 수업 일정을 고려한 학교-강사 매칭 진행
	Ţ
5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모임 진행
	Ţ
6	참여학교별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결과발표회 진행

* 세부 추진일정 운영기관 홈페이지 www.skart.or.kr 공지 및 별도 안내 예정

□ 기획사업 통일염원 콘서트
ㅇ 추진목적 :
- 경기도 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국악 포함 8개 분야 예술강사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콘서트를 개최하여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 마련
ㅇ 추진대상 : 경기지역 내 2021년도 초·중·고 참여학생 및 8개 분야 예술강사
ㅇ 추진일정 : 추후 공지 예정(2021. 9월 예정)
ㅇ 추진장소 : 추후 공지 예정
※ 세부 추진일정 운영기관 홈페이지 www.skart.or.kr 공지 및 별도 안내 예정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학교 & 예술강사 대상 통합 설명회

FAQ

FAO

- □ 학교 예술강사 근로계약 관련 FAQ
 - Q. 2021 학교 예술강사 근로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o 2021 학교 예술강사 근로계약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방법)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활용(* 온라인시스템 내 입력한 메일로 링크 발송)
 - (대상)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 강사 중 출강일정 협의 완료한 강사
 - (기간) 2021년 3월 ~ 12월(상시)
 - (내용) 근로계약서 등 전자 서명 및 기타 부속서류 제출

서명	표준근로계약서, 예술강사 총 출강표, 직무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 (해당자) 장애인 출강 보조금 증빙서류(장애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복지카드
서류	앞뒷면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Q. 전자근로계약 체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o 별도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공지문 및 [붙임4]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ㅇ 전자근로계약 체결 단계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Q. 전자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링크는 언제 보내주시나요? 접수된 내용은 어떤 절차를 통해 검토, 확정되나요?
- o 학교와 출강일정 협의를 완료한 강사가 지역별 고지된 제출처(지역운영기관)에 '월별 출강 계획서'와 '사전 방문보고서'를 제출하면, 지역운영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합니다.
- 모든 내용이 정상 작성·제출된 예술강사에 대하여는 진흥원에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링크를 송부합니다.
- o 예술강사가 위 링크를 통해 서명 및 필요 첨부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최종 접수 처리 완료됩니다.

o '확정'은 접수 내용을 재차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최종 확인 시 메일 및 문자가 발송됨을 참고 바랍니다.

[참고] '월별 출강 계획서' 검토 및 최종 확인 절차

예술강사, 학교		예술강사		운영기관 →진흥원		진흥원
① 학교 별 출강일정 협의	\Rightarrow	② 계획서 제출	\Rightarrow	③ 내용 검토 및	\Rightarrow	④ 최종 확인
및 계획서 작성				전달		

- Q. 모든 출강 학교에 대한 출강일정협의가 끝나야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 일부 학교만 협의가 끝난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일부 학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서류 토대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예시) 3월부터 A, B 2개 학교를 출강하고 9월부터 C 학교를 출강하는 강사로서, 아직 C학교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 일정이 확정된 A, B 학교에 대한 계획서를 우선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C학교의 출강일정 확정 시 C학교에 대한 계획서를 추가 제출하여 근로계약 변경 체결 진행
- Q. '사전 방문보고서'와 '월별 출강 계획서'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o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 계획서' 모두 필수제출 서류로서 출강 학교별 각 1개씩, 지역운영기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출강 학교가 두 개(A, B)인 경우

▷ A, B 출강학교별로 각각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 계획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o 단, 최초 체결 이후 출강일정이 변경되어 학교별, 월별 출강시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월별 출강 계획서'만을 다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 수정 관련 사항은 '5. 근로계약 수정 관련' FAQ 참조
- Q. 비대면으로 사전방문을 진행할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나요?
- ㅇ 비대면 사전방문 시 동일하게 협의내용 작성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Q. '사전 방문보고서'와 '월별 출강 계획서'내 서명은 필수인가요?
 - o 서명을 통해 협의 내용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서명 포함된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서명의 형태(이미지 파일, 전자 서명 및 날인, 직접 서명 후 스캔 등)는 무관)

o 단, 출강일정 수정의 사유로 '월별 출강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해당 학교의 연 출강 시수에 변경이 없다면 강사의 서명만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월별 출강 계획서' 내 상황별 필요 서명 예시

	취호하다 시원기	변경 시			
	최초 확정 신청시	연 출강시수 변경 시	월 출강시수만 변경 시		
예술강사 서명	✓	✓	✓		
담당교사 서명	✓	✓	-		

- Q. '월별 출강 계획서'에는 월 단위 출강시수만 기재하면 되나요? 일 또는 주단위 출강시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 o 월별 출강시수만 기재하면 무방하며, 월별 출강시수가 59시수 이내로 기재된 계획서는 정상 접수 및 수락 처리됩니다.
 - * 출강시수의 검토는 강사가 출강하는 모든 학교 출강시수(아동분야 복지시설 출강시수 포함)의 합 기준으로 진행
- Q. 전자근로계약 체결시 어떠한 부분을 주로 확인해야 하나요?
- 학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월별 출강 계획서'를 토대로 합산한 해당 강사의 총 출강시수
 등 작성 필요한 주요 사항의 일체는 교육진흥원에서 기입하여 송부하므로, 근로계약서
 및 서명 필요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 o '예술강사 총 출강표'에 근거하지 않은 활동은 출강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특히 근로계약서의 별지로서 붙어있는 '예술강사 총 출강표'에 기재된 월별 출강시수가 제출하신 '월별 출강 계획서'에 기재한 시수의 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해 서명 및 제출 완료 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건가요?
- ㅇ 서명완료 후 담당자 '수락'까지 이루어져야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 Q.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해 서명 및 제출 완료 했습니다. 출강 가능한가요?
- ㅇ 담당자 수락 후(계약 체결 완료 후), 출강이 원칙입니다.
- ㅇ 단,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 3월 출강 강사에 한하여 근로계약 체결 이전 출강이 허용됩니다.

(예시) 3월 2일 출강 강사의 경우

- ▷ 사후 수리 허용으로 3월 말일까지 계획서 최종 제출 및 근로계약 체결 진행 가능
- ※ 단, 시기를 고려한 예외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근로계약 체결 필요하며, 월 59시수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후 수리 또한 제한됨

- Q. '예술강사 총 출강표'는 어떤 용도의 서류인가요?
- o '예술강사 총 출강표'는 학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월별 출강 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강사의 총 출강시수를 확정하기 위한 서류로서, 근로계약서와 함께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서류입니다.
- o 근로계약 체결 완료 시, 총 출강표에 기재된 월별 출강시수가 해당 강사의 월별 소정근로시간 으로 취급됩니다.
- Q.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업로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필수인가요?
- ㅇ 근로계약 체결 시 첨부파일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 서류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o 이때 필수 제출 서류는 총 2가지(신분증, 통장사본) 이며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Q. 근로계약 체결 이후 출강기간 및 시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o 확정된 출강기간 및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월별 출강 계획서'를 지역운영기관으로 수정 제출하여 근로계약서 수정에 대한 진흥원의 재수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 ㅇ 근로계약서 수정도 최초 체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Q. 근로계약서 수정 시 '월별 출강 계획서'는 언제까지,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 o (제출 기한)
- 근로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 관리 제도의 운영 취지를 고려, 시수 변경이 해당되는 월의 말일까지만 계획서 변경 제출 가능합니다.
- 단, 오기재 등에 따른 반려 및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 월말에 임박한 제출은 가급적 지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월말 일정에 대한 학교의 급박한 변경 요청 등 강사의 귀책사유없이 계획서 제출이 늦어져 결손시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을 검토합니다.
- ㅇ (제출처)
- 계획서의 경우 처음 근로계약 체결과정과 동일하게 운영기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Q.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때에도 최초 체결시와 동일하게 동의 및 서류제출이 진행되어야 하나요?
- o 수정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예술강사 총 출강표'에 대한 서명만 진행하며, 다른 서류에 대한 서명이나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Q. 코로나19 인한 학교 학사일정 지연 등으로 출강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에도 현재의 관리체계로 진행될까요?
- o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또는 심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거나 전반적인 학교 학사 일정 지연 등의 환경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유연화 조치 등은 단계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 강사 활동포기 및 사직 관련 실무사례 FAQ
- (1) 취직(개인사유)으로 인해 올해 사직을 희망하는 강사의 차년도 활동 가능 여부는?
 - ⇒ 개인의 사유로 인해 '21년도 강사 사직할 경우, 선발 주기('21~'23)의 활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추후 신규강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심사 진행 필요 ('22년도 강사 선발 관련 세부사항 추후 안내 예정)
- □ 금품청산의무 이행 관련 실무사례 FAQ
- (1) 기간 만료가 아닌 근로자의 의원사직의 경우에도 금품청산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 적용됨. 퇴직의 사유는 요구하지 아니함
- (2) 금품 지급기일 연장합의서의 징구는 어느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징구해야 함
- (3) 연장합의로서 연장할 수 있는 지급기일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 ⇒ 특별한 법정의 제한은 없음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학교 & 예술강사 대상 통합 설명회

관련서식

[서식1] 강의경력증명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강의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강사명 (강사번호)								
생년월일				담당분	분야			
수 령	팩스			팩스티	<u>번</u> 호			
가 정 방 법 ※ 해당사항에 √체크	이메일			이메일	주소		@	
V AII	우편			자택	주소			
발 급 연 도 ※ 증명서 발급 희망 연도에 체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21년□ ※ 증명서 발급 신청 공지문 내 분야/연도별 발급기관 확인 필수 ※ 상기 체크박스에 없는 연도의 경우 해당 활동연도 소속 운영기관(계 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발급 진행						꾸	
연락처								
위와 같이 강의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인 :			(인) ※	서명 필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중								

※ 발급 신청 후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3일 소요(우편수령 신청 시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서식2] 재직증명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재직 증명서 발급 신청서						
강사명 (강사번호)						
생년월일			담당분야			
	팩스		팩스번호			
수 령 방 법 ※ 해당사항에 √체크	이메일		이메일 주소	@		
, ,	우편		자택 주소			
연락처			발급 부수	부		
	위의		증명서 발급 년 월	을 신청합니다. 일		
			신청인 :	(인) ※ 서명 필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중						

[※] 재직증명서는 재직 기간 중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신청 후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3일 소요(우편수령 신청 시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서식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신청서

	예술	「학교 여 강사 원천정	I술강사 지원 당수영수경		신청서	
강사명 (강사번호)						
생년월일			담당분야			
수 령	팩스		팩스번호			
가 당 방 법 ※ 해당사항에 √체크	이메일		이메일 주소		@	
. "	우편		자택 주소			
발 급 연 도 ※ 증명서 발급 희망 연도에 체크	※ 원천징	발급 신청 공지문 내	이내 발급건만 가		발 급 부 수	부
연락처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u>년</u> 월	일		
신청인 : (인) ※ 서명 필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중						

※ 발급 신청 후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3일 소요(우편수령 신청 시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서식4] 월별출강계획서

-							
			월별 출경	강 계획서			
①?	강사 성명			②강사번호			
3	출강 학교명			④연간 출강시수	<u> </u>	총 0시수	
5	월별 출강시수						
	출강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출강시수	0시수	0시수	0시수	0시수	0시수	
	출강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출강시수	0시수	0시수	0시수	0시수	0시수	
*	* 매월의 출강시수 값은 각 59시수를 초과할 수 없음(강사 기준)						
상	상기 내용으로 출강 계획을 제출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22.						
	학교명: G (인) 예술강사: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중						

[서식5] 사전방문보고서

사전 방문보고서

강사번호	강사명		분야	
학교명	수혜학급 수/학생 수	/	협의	□ 대면 / □ 비대면

1. 교육활동 제반사항 협의

구분	협의 내용
예술강사의 연간 교육 개요	* 예술강사는 본인의 수업 방향성 및 지향점을 토대로, 연간 교육활동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강사-담당교사 간 합의된 연간 교육방향 및 목표	* 예술강사와 담당교사 간 합의된 연간 교육방향과 목표 등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자재 및 대기 장소 등 학교 지원 사항	* 운영학교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위해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항 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온라인 및 콘텐츠 지원 관련 수업 운영 방안 등과 같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일시	성 명	서 명 란			
	(예술강사)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담당교사)	예술강사 : 인 담당교사 : 인			

[서식6] 장애인 출강보조금 신청서

장애인 출강 보조금 신청서

분 야		분야	강사명	강사번호	
	1				
출 강 학교명	2				
	3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출강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첨 부 :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2021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출강 보조금 신청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며, 보조금은 출강 확인 완료된 해당월 강사비와 함께 지급됩니다.

[서식7]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출산전후후	후가 신청서			
성 명		강사번호			
담당분야		연락처			
휴가 개시일	20 년 월 일	휴가 종 료일	20 년 월 일		
출산 예정일		20 년 월 '	일		
상기 본인은 근로	상기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오니 승인 바랍니다.				
	2021				
	성명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중		

[서식8]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배우자 출신	·휴가 신청서			
성 명		강사번호			
담당분야		연락처			
휴가 개시일	20 년 월 일	휴가 종료일	20 년 월 일		
출산일		증빙서류	* 출산증명서, 신청인과 출산여성의 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각 1부		
상기 본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오니 승인 바랍 니다.					
	2021.				
	성명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중		

[서식9]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식 신청서	
성 명		강사번호	
담당분야		연락처	
육아휴직 개시일	20 년 월 일	육아휴직 종료일	20 년 월 일
증빙서류	* 신청인과 대상 자녀의 관계 확인 가	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상기 본인은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위와		신청하오니 승인 바랍니다.
	성명	(인)	
			한국문화예술교 육 진흥원 귀중

[서식10] 채용 전 활동 포기서

	(채용 전) 활	동포기시	4
성명		생년월일	
활동자격기간	1기 / 2021 ~ 2023년	연락처	
주소			
사유			
	예술교육진흥원 학교 예술강사· · 예정 자격을 포기합니다.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상기 사유로 당해
	20 .		
	작성자	(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중

[서식11] 강사활동 중도 포기(사직) 신청서

강사활동 중도 포기(사직) 신청서					
성 명		강사번호			
활동자격기간	1기 / 2021 ~ 2023년 *임의수정 불가	총 계약시수 (출강시수)	() 시수	
담당분야		연락처			
입사일 (근로계약 시작일)	20 년 월 일	사직 희망일	20 년	월 일	
중도 포기 신청 사유					
※ 신청이 수리되는	의 사직 신청 수리 여부 및 시기 경우 당해 선발 주기의 활동 7 의사 철회 불가함.				
상기 본인은 위 사유에 따라 강사활동 중도포기(사직)를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예술강사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중					

[서식12] 배치시수 포기 신청서

배치시수 포기 신청서					
성명			강사번호		
담당분야			연락처		
대상학교명			교육과정		
현재 배치시수	() 시수	포기 대상시수	() 시수	
포기 사유					
※ 신청 수리 시 대상 시수에 대한 활동 자격과 의무 일체 소멸하며, 이후 포기 의사 철회 불가함.					
상기 본인은 위 내용과 같이 배치시수의 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예술강사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귀중				

[서식13] 금품 지불기일 연장합의서

금품 지불기일 연장합의서
성명:
연락처: 주소:
상기 본인은 본 사업의 특성과 기관의 회계 처리기간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본인의 청산 대상 임금 및 금품 등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른 처리시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보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감수하고 수령하기로 하겠으며, 이를 이유로 금후 민·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이 규 석 (인) 퇴직자: (인)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학교 & 예술강사 대상 통합 설명회

원격수업 준비 및 실행 길라잡이

부록1

[부록 1] 원격수업 준비 및 실행 길라잡이

[원격수업 준비 및 실행 길라잡이]

1 원격 수업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단계	설명	주체
1	수업방식 협의	→ 예술강사와 학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예 술강사 수업의 특성, 학교의 상황을 고려 하여 <u>원격수업 방식에 대해 협의</u> 합니다.	(예술강사-학교)
SEC.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	원격수업 준비	→ 학교에서 원격수업 시 사용하는 플랫폼 의 정보와 예술강사의 원격수업 방식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용할 플랫폼을 결정 합니다.	(예술강사-학교)
10.000.000			
3	원격수업 기획	→ 원격수업 방식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의 수업 내용을 기획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예술강사-학교)
4	원격수업 운영	→ 원격수업 방식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거나, 콘텐츠를 학교에 제공합니다. ※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기본으로 운영	(예술강사-학교)
5	출강결과 등록	→ 원격수업 <u>출강결과</u> 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때, 원격수업의 유형별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예술강사)
6	출강결과 승인	→ 학교에서 예술강사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한 원격수업 <u>출강결과</u> 를 확인한 후 출강승인을 합니다.	(학교)
7	강사비 지급	→ 학교가 승인한 온라인 시스템의 출강결과를 바탕으로 강사비를 지급 합니다.	(운영기관, 진흥원)

2 원격수업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공통

☑ 원격수업 운영 방식을 결정해요.

- → 학교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환경을 예술강사에게 공유해 주세요. 현재 학교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원격수업 운영 방식, 플랫폼 계정 사용 여부, 학교 기자재 현황 및 사용 여부 등을 공유해 주시면 원격수업 방식을 결정하기 수월해요.
- → **예술강사** 본인의 **분야 및 수업 방식, 콘텐츠 제작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의 원격수업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식을 결정해요.

☑ 함께 원격수업을 기획해요.

- → 학 교 수업의 목적과 학교 및 학생들의 환경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수업의 목표와 구성, 내용을 예술강사와 함께 고민해 주세요.
- → 예술강사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목표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예술 수업을 기획해 주세요. 이 때 기획한 수업이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잘 전달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세요.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수업에 활용할 플랫폼을 결정해요.

- → 학 교 학교에서 활용 중인 플랫폼의 정보를 제공하고, 예술강사가 플랫폼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공공플랫폼의 계정 제공이 어렵다면, 민간플랫폼의 계정 제공에 협조해 주세요.
- → **예술강사** 플랫폼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요.

☑ 기자재를 준비해요.

- → 학 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교내 장비(화상 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등) 이용에 협조해 주세요.
- → **예술강사** 추가로 필요한 기자재(마이크, 태블릿 등)를 사전에 조사하고 준비해요.

②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

☑ 콘텐츠 제작 방식을 결정해요.

- → **학** 교 학교별 상황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방식을 함께 논의해요.
- → **예술강사** 선택한 콘텐츠 제작 방식(영상 편집, PPT 음성녹음 등)을 사전에 숙지해요.

☑ 기자재를 준비해요.

- → 학교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예술강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 → **예술강사** 콘텐츠 제작 방식에 맞는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참고 나에게 맞는 원격수업 방식 체크리스트

※ 나에게 맞는 원격수업의 방식은 무엇일지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 학교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자재 예시: 노트북, 마이크 등	П	✓ 콘텐츠 제작(촬영·편집)을 위한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자재 예시: 카메라, 노트북, 마이크 등		
✓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를 갖추고 있어요.		✓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촬영 및 편집)을 갖추고 있어요.		
✓ 학생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참여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원활히 이용하는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생		 ✓ 학생들이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수업 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 상대적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보다 콘텐츠 이용이 수월한 초등 저학년, 특수 학급 등 		
✓ 나의 수업 내용이 학생과 실시간 상호작용 을 하며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에요.		✓ 나의 수업 내용은 학생들이 콘텐츠를 시청하며 천천히 따라하는 활동이거나, 여러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에요.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적합해요		②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에 적합해요	*******	

[※] 둘 중 체크 항목이 많은 원격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원격수업 준비 체크리스트

※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Ø
✓ 문화예술교육을 원격수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교와 협의하였나요?	
✓ 원격수업 출강일정을 학교와 협의하였나요?	
✓ 원격수업 유형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나요?	
✓ 원격수업 유형 별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나요?	
✓ 출강하는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에 사용할 플랫폼을 공유해주고 있나요? 플랫폼 정보 를 공유 받고, 계정 이용에 무리가 없나요?	
✓ 학교가 보유한 원격수업 지원 기자재 현황을 알고 있나요?	
✓ 수업 대상 학급의 학습 환경이 원격수업에 적합한지 숙지하고 있나요?※ 초등 저학년, 특수학급, 다문화 가정 학생 등 고려	

[※] 항목 중 체크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운영 예정인 원격수업을 다시 점검해보세요.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학교와 협의를 거쳐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3 원격수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3-1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학교

☑ 예술강사와 함께 협력수업을 해주세요.

-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함께 참여해 예술강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 원활한 쌍방향 수업을 지원해 주세요.

- 수업 운영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정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해주세요.
- 사전에 학생에게 수업에 대한 공지를 해 주세요.
- 수업 전, 학생들에게 예술강사의 초상권 및 수업 내 활용되는 콘텐츠 저작물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한 교육을 해주세요.
-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지원하고, 수업 시 학생 참여를 독려해주세요.

• 예술강사

☑ 수업 구성을 적절하게 준비해 주세요.

- 수업준비, 과제 수행,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요.
-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규칙을 정하고 공지하는 것이 좋아요.
 - 원격수업은 대면 수업과 달리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학생들이 따를 수 있는 수업의 규칙을 정하면 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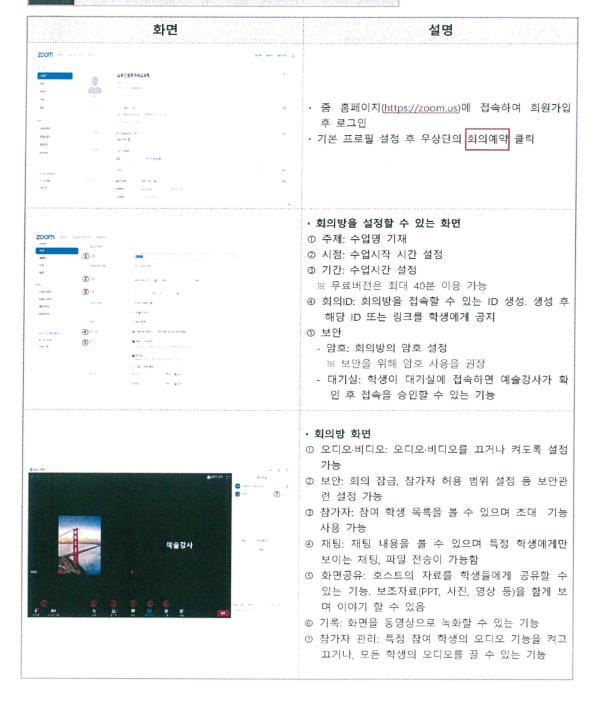
☑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세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업화면을 무단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 주세요.
- ※ 저작권 보호 안내 예시: "실시간 수업 화면을 무단으로 녹화·녹음 등을 하여 타인에게 복제·배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참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프로그램

	실행 화면	특징
줌(ZOOM)	g3 Ourlook	. 최대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음 .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등 여러 부가 기능이 있음 . 무료회원은 1회 40분의 시간제한이 있음
MS 팀즈		. 최대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음 . MS 오피스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호환성이 좋음 . 무료회원은 1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함 . 참가자의 출결 관리가 쉬움
카카오톡 라이브톡		. 사용법이 쉬우나, 아이디 가입 등 접근성 제한 . 참가자는 채팅을 통한 의사소통만 가능함 . 채팅방을 통해 공지 전달 및 과제 제출이 가능함

참고 ZOOM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법



3-2 콘텐츠 제작·활용 수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학교

☑ 콘텐츠 제작에 협력해 주세요.

- 예술강사와 협의하여 콘텐츠 기획단계에 참여해 주세요.
- 무리한 분량의 콘텐츠 제작을 요구하지 말아 주세요.

☑ 콘텐츠 활용 시 유의해 주세요.

-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제한조치(로그인을 통한 이용 또는 비공개 링크 공유)를 해 주세요.

• 예술강사

☑ 콘텐츠 제작 방법을 사전 숙지해 주세요.

- 콘텐츠 제작 방법을 결정한 후 제작 방법(영상 촬영.편집, PPT 제작 등)을 숙지 해 주세요.
- ※ 콘텐츠 제작의 자세한 방법은 [p.20 콘텐츠 제작 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콘텐츠를 활용한 상호작용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좋아요.

- 일방향 수업이 되지 않도록 자기학습활동, 토론 등의 활동으로 상호작용 요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요.

☑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1차시의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야 해요

- 온라인 학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 도록 여러 활동 자료를 콘텐츠에 포함하여 제시하면 더욱 좋아요.

☑ 제작한 콘텐츠를 학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콘텐츠를 학교에 제공할 때, 콘텐츠 수업의 목적 및 방향에 따라 진행될 수 있 도록 교사가 알아야 할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 잘 안내해주세요. 간단히 운영방 안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것도 좋아요.

☑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세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 주세요.
- ※ 예시: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를 내려 받는 경우에는 수업목적 이외에 이를 복제하 거나 동일한 수업을 듣는 학생 외 타인에게 배포·전송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파워포인트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방법

화면	설명
<u>本1.2 まりません</u> 51.8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 수업에 활용할 PPT 자료를 불러옵니다. · [슬라이드쇼] - <mark>[슬라이드쇼 녹화]</mark> 를 클릭합니다.
수업 자료	・녹화 화면이 뜨면 마이크를 통해 음성을 녹음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화면이 되면 녹화가 종료됩니다.
日本 中国 (日本 中国) (日本) (日本 中国) (日本	[파일] - [내보내기] - [비디오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금질 선택: 영상의 규격 설정할 수 있으며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인터넷 품질' 이하로 설정할 것을 권장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 선택: 녹음한 음성과 잉크 및 레이저포인터의 사용 여부를 선택

※ 자세한 내용은 `20년 온라인콘텐츠 제작 가이드 영상(이론편) 참고(https://youtu.be/tR30AINK9Qc)

4 원격수업 운영 시 기타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디지털 격차를 고려해 주세요.

- → **학** 교 학급 내 디지털 기기 이용 환경 및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의 정보를 미리 공유해 주세요.
- → **예술강사** 취약계층과 장애학생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대상자를 고려한 수업을 운영해 주세요. 특히, 초등 저학년과 특수학급 대상 수업 운영 시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을 고려해 주세요.

☑ 사이버 안전 문제에 유의해 주세요.

- → 학 교 기자재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해주세요.
- → **예술강사** 콘텐츠 수·발신 과정에서 불명확한 메일은 열어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보안이 취약한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 사용해주세요.

☑ 플랫폼 이용에 협력해 주세요.

- → **학 교** 학급에서 이용하는 플랫폼의 정보를 예술강사에게 사전에 공유하고 계정 공유 등에 협조해 주세요.
- → 예술강사 학교별로 상이한 원격수업 플랫폼에 대해 사전 숙지를 해주세요.
 - ※ 공공플랫폼: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 ※ 민간플랫폼: ZOOM, MS Teams, 네이버밴드 라이브, 카카오톡 라이브, 구글 클래스룸, 클래스팅 등

☑ 동영상 관련 장비 이용 시 유의해 주세요.

→ 예술강사 실시간 쌍방향 수업 또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시 마이크를 연결 하고, 삼각대 등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고정하는 것만으로 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콘텐츠 제작 시 참고자료]

영상 촬영 시 어떤 장비를 활용해야 하나요?

☑ 영상 녹	☑ 영상 녹화 장비				
카메라		-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해 용량이 크지 않도록 설정하여 촬영해 주세요.(MP4형식, SD급(480p, 720*480))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의 카메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촬영 시 특이사항이 없다면 가로로 촬영 하는 것을 권장해요. - 비행모드를 활성화 하여 촬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요.			
☑ 음성 녹	음 장비				
마이크	Q	- 촬영 시 별도의 마이크 를 이용해 음성을 녹음할 것을 권장해요.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는 음성을 깨끗하게 담기 어려워요. - 마이크 장비가 없다면 헤드셋, 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 을 이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마트폰 음성녹음		 마이크 장비의 사용이 어렵다면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의 위치를 발화자 가까이에 두면 비교적 좋은 음질로 음성이 녹음할 수 있어요. 녹음 파일과 녹화한 파일을 편집 과정에서 결합해야 해요. 이 때 싱크가 잘 맞도록 유의해야 해요. 			
☑ 기타 장	비				
일반 삼각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촬영에서 삼각대는 필수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해요. 삼각대의 다리와 카메라 방향의 각도가 직각이 되도록 해요. 각도가 위 또는 아래를 향할 경우 영상의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수직촬영 거치대		- 부감 촬영에 유용한 거치대에요. - 책상 위에서 하는 활동(만화애니, 디자인, 공예 등)을 촬영하기 유용한 장비에요.			
조명		- 촬영 장소의 밝기가 어두우면 좋은 화질의 영상을 녹화하기 어려워요 LED 조명은 구하기 쉽고 사용법이 쉬워 초보자가 이용하기 좋아요 조명 장비가 없는 경우 촬영 공간의 조명을 밝게 하고, 조명의 색을 서로 맞추는 것이 좋아요.			

※ 자세한 내용은 `20년 온라인콘텐츠 제작 가이드 영상(실기편) 참고(https://youtu.be/tR30AINK9Qc)

2 영상 편집 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나요?

☑ 영상 편집	☑ 영상 편집 프로그램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	The second of th	→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편집프로그램 - 사용법이 간단하여 초보자가 이용하기 쉬워요 기본적인 편집 기능만 이용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 PERFE	→ MS 오피스 파워포인트의 부가기능으로 화면에 음성을 더한 녹화 또는 웹캠을 이용한 녹화 가능 - 화면에 음성을 추가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설명 위주의 교육에 적합해요 하지만 여러 촬영본을 편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곰믹스		 → 곱앤컴퍼니에서 제공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 필수적인 편집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 무료버전에 기능 제약이 있으며 사용범위가 개인에 한 정되어 있어 학교 기자재에서 사용하기는 곤란해요. 		
브루	(0)(s)	→ 인공지능 영상 편집 프로그램 - 촬영한 영상에 자동으로 자막을 추가하는데 유용해요.		

** 자세한 내용은 `20년 온라인콘텐츠 제작 가이드 영상(편집편(https://youtu.be/1OU2F53NI9U), PC 편집편(https://youtu.be/DpMW7Ze4alc)) 참고

참고 문화예술교육 리소스 홈페이지 안내

분야	홈페이지명	설명	주소
	국악아카이브	국립국악원에서 전통 음악, 무용, 연희 및 창작 국 악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	http://archive.qugak.go.kr
국악	e-국악아카데미	국립국악원에서 이러닝/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을 대중 속으로 보급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	https://academy.gugak.go.kr
	지금풍류	슈퍼스트링사운드에서 국악기를 혼자 합주할 수 있 도록 만든 한국 전통음악 플랫폼	https://art-atm.com
	공연예술 K판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총 4개 기관의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모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https://www.iha.go.kr/k-paan
연극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국립극장에서 생산된 공연예술 관련 콘텐츠 목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	https://archive.ntok.go.kr
	국립극단 유튜브	국립극단에서 대국민에게 관련 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해 만든 채널	https://www.youtube.com/u ser/ntckmaster/videos
	창작산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인 창작산실이 사업 관련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채널	https://www.youtube.com/c/ ARKOSelection/featured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 통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 관련 각종 원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카테고리	https://www.kofic.or.kr/kofic/b usiness/rsch/findPolicyList.do
영화	한국영화데이터 베이스(KMDb)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국내외 영화 관련 VOD, 소장 아카이브자료, 영화 관련 리뷰 등의 정보를 제공하 는 사이트	https://www.kmdb.or.kr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국내외 영화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메뉴	https://www.koreafilm.or.kr
по	국립현대무용단 유튜브	국립현대무용단이 대국민에게 관련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채널	https://www.youtube.com/u ser/34721420
무용	국립발레단 유튜브	국립발레단에서 공영한 다양한 작품들과 관련된 영 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채널	https://www.youtube.com/c hannel/UCqXxaAUCdtML1P Ovdp3Zm1w
만화/ 애니메이션	디지털만화규장 각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만화와 관련된 모든 자료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사이트	https://dml.komacon.kr
공예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자료 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공예, 디자인 관련 콘 텐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카테고리	https://bit.ly/3qfRDBz
3 1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아카이브센터	공예인과 디자이너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국내 최초 공예·디자인 전문 자료실	https://library.kcdf.kr
	디자인DB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 향 상을 위해 운영하는 디자인 전문 사이트	http://www.designdb.com
디자인	네이버 디자인	디자인프레스에서 '디자인, 공예, 아트' 관련 콘텐츠 를 제공하고 관련 비즈니스/프로젝트 협업을 위해 만든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si gnpress2016
기타	서울창의예술 교육센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온라인예술교육 콘텐츠 영상자료 등 확인 가능	https://www.sen.go.kr/crezo ne2/FUS/BO/refer/BOL11.do
	학교예술교육 포털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문 화예술교육 원격수업 운영사례 확인 가능	https://artsedu.kofac.re.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라이브러리(www.lib.arte.or.kr)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 1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1-1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설명

- ☑ CCL은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로 저작권자의 자발적 공유를 창작물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 아래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이미지 검색 옵션에서 CCL 설정 체크 후 검색이 가능해요.

☑ 이용허락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유형

라이선스	문자표기	내용
CC BY	CC BY	저작자 표시
CC (S)	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
© () (=) BY ND	CC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O BY SA	CC BY-SA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변경 허락
BY NC SA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 동일조건 변경 허락
CC (1) (S) (E) (BY NC ND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1-2 공공누리

☑ 설명

- ☑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라이선스**입니다.
- ☑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서 저작물 검색 후 이용 가능해요.

☑ 이용허락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유형

라이선스	유형	내용
●PEN (1000) おお中間 おお中間 がおればが何	1유형	- 출처표시
PEN LIE CO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OPEN LUS LUS LUS BRANCH CONTROL CONTRO	3유형	- 출처표시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PEN DE TEN ESTABLES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참고 기타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

분류	이름	링크	소개	
통합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유저작물을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이트	
공유저작물	교육기부	teachforkorea.go.kr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사회 및 개인이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사이트	
	픽사베이	pixabay.com	저작권 없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	
이미지	플래티콘	flaticon.com	저작권 없는 아이콘 및 벡터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youtube.com/audiolibrary		
음악	자멘도	jamendo.com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음원 제공 사이트	
67	브이터이 주뮈드프	freemusicarchive.org/static	(이용 범위 확인 필요)	
	프리사운드	freesound.org		

2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저작권 용어는 어떤 것인가요?

☑ 해설					
	저작권	-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함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음(무방식주의)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뉨			
			공표권	저작물의 공표 여부 결정의 권리	
	저작 인격권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 등 인격 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타인에 양도 불가	성명표시권	저작자의 실명 표시 여부 결 정의 권리	
		X 시간에 O.T. 물기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동일성 유지 권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	복제권	저작물의 인쇄. 사진촬영. 복 사. 녹음. 녹화 등의 권리	
			공연권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By sale special and a second s			공중송신권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 으로 송신할 권리	
	저작 재산권	하기 위한 권리 ※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전시권	저작물을 공중이 접근하여 관 람할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양도 가능	배포권	저작물을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대여권	판매용 음반 또는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	
저작인접권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자본 투자와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 하는 권리			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		

[※] 본 내용은 법률상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저작권법 내용 참고

참고 저작물 이용 체크리스트

	검토 내용	확인		
	① (법적 공표)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인가? - 불법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자료일 것 - 공표된 자료일 것 - 저작물에 해당할 것		→ 아니오	
	※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예			11
ſ	② (이용 허락) 이용허락을 사전에 받았는가? -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미리 표시한 경우(CCL,공공누리) 또는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요건에 맞게 이용			
	↓ 아니오		1	자유롭게
	③ (이용 목적) 수업·수원지원 목적에 해당하는가? - 수업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 아니오	이용할 수 없으며
	<u></u>			이용허락이
예	(5) (전달 방법) 기술적보호조치를 하였는가? - 접근제한조치(회원 인증, 로그인 절차 등) - 복제방지조치 -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 표시 - 출처 표시		→ 아니오	필요함
	↓ 예	-		
	 ⑥ (이용 범위) 이용의 양과 범위가 적당한가?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최소 범위여야 함 		→ 아니오	
	↓ 예			
	저작물 이용이 가능함			

- 113 -

참고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영상 목록

분류	출처 및 제목	링크	비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은라인미디어 예술활동저작권 교육	https://artson.arko.or.kr/html/s ub06.html	* 7편
저작권 개념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교육영상 저작권법 기초 다지기	https://www.youtube.com/wat ch?v=6DkWZSq-RFk	* 4편
온라인 수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수업 할 때 저작권, 이것만 기억하자	https://www.youtube.com/wat ch?v=xqsQMLPrA0k	
관련 저작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저작권 이해하기	https://youtu.be/9e1j8fGU0	
공정이용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교육영상 저작권의 공정이용 Q&A	https://www.youtube.com/wat ch?v=4SpydcNzZNo	* 4편
공유저작물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물 이용 꿀TIP	https://www.youtube.com/wat ch?v=VWFwJP-lxcY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의 개념과 활용 방안	https://www.youtube.com/wat ch?v=P8SFvKmJFaA	

[※] 해당 정보 외, 포털사이트 등 검색을 통해 유의미한 저작권 관련한 정보 참고 가능

참고 '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시업 지역운영기관별 예술강사 원격수업 지원 관련 시업 목록

지역	운영기관	사업명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서울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강사 역량강화 교육 콜로키움 (Professional Development Colloquium)	예술강사의 교수법, 문화예술 교과과정 이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를 비롯한 비대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에 관한 온라인 교육	'21년 6월~9월 중
	성결대학교	온·오프라인 통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원격수업(콘텐츠·실시간 쌍방향 등) 역량강화 및 전문성 신장	`21년 연중 3회
경기	산학협력단	예술강사 수업 연구모임	8개 분야 예술강사 연구 모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교수역량 및 예술교육 전문성 강화	'21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인하대학교	연구모임 지원	비대면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모임 지원	'21년 상반기, 하반기
인천	산학협력단	찾아가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온라인 강의 연구 장소 제공, 찾아가는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21년 상반기, 하반기
강원	강릉문화원	역량강화 연수	연수 내용 중 '모의수업 컨설팅-수업에 활용 하는 동영상 자료 만들기' (수요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1년 9월 중 1회
충북	서원대학교	중등분야 통합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여러 예술장르가 접목된 중등 대상 통합예술 개발과 원격수업 모델 제시 및 역량강화 연수	'21년 3월~12월 중
0	산학협력단	특수분야 무용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충북지역 장애학생을 위한 무용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역량강화 연수	'21년 3월~6월 중
충남	순천향대학교	Media Inside 인프라 구축	미래 기술 기반 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연구·제작·교육 및 공유, 확산할 수 있는 4단계의 전주기적 교육환경 Media Inside 인프라 구축	'21년 3월~12월 중
ਠਰ	산학협력단	스튜디오·교육 기자재 지원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을 VR · AR · MR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다 양하게 강의를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교육 기자재 등 지원	'21년 3월~12월 중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기똥찬 연구모임 지원	3~5인 이내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비대면 수업 활용 예술교육 키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21년 5월~11월 중
대구	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	비대면 학교 문화 예술교육 환경개선	비대면 교육 영상 콘텐츠 4종 제작 및 시범 배포	'21년 3월~12월 중

	NAME OF THE PROPERTY.	고문제는 비디머	I	T
		프로젝트-비대면		
		학교 문화예술교육		
12000		영상 콘텐츠 개발		
경남	문아트컴퍼니	경남 예술강사 연구모임	대면·비대면 형태의 교안개발 연구 모임 지원 및 팀티칭 방식의 영상과 타분야 융복합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21년 3월~12월 중
울산	문화예술센터	원격수업을 위한 온라인콘텐츠 만들기	원격수업 제작에 필요한 내용 및 기술을 지 원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 해소	'21년 4월 중 3회
	결	예술공간 VR·AR만들기 역량강화	VR·AR 감상과 체험을 통해 예술영역의 확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1년 8월 중 2회

^{**} 해당 내용은 2021년 지역운영기관 사업계획서 토대 내용 발췌로, 실제 운영과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https://hrd.arte.or.kr/)에서 학교 예술강사의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연수(~ '21년 3월 31일) 외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연수에도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식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OO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저작권자(또는 저작인접권자) 예술강사 OOO은 (이하'강사'라 한다)은 (는) 본 동의서에 명시한 저작물(이하'본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에 동의한다.

제1조(저작자 및 저작물)(또는 저작인접권자 및 저작인접물)

1. 저작지	보)	는 저작인접권자) 표시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	번호		주 소			
2. 저작물	(는	저작인접물) 표시	(저작물이 많은 경우 별지 활용)			
제목(부저)	예) 국악 원격수업 콘텐츠	종 별 영상저작물			
수 링	ŧ	교육콘텐츠 <u>개</u> (총 출강시수 <u>시수</u> 상당, <u>차시분)</u>				
연 번	<u> </u>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내용 개요 공급일				
1		예) 판소리의 이해	ભી) 2021. 3. 10.			
2		예) 판소리 가창	예) 2021. 3. 15.			
3						
4						
5		The state of the s				

제2조(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이용허락) '강사'는 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학교'에게 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허락한다.

- 1. '학교'의 '2021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는 경우('학교'가 원 격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기타 교육에 수반되는 이용 일체 포함)
- 2.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학교'의 '2021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는 경우

제3조(이용기간)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본 동의서 작성일부터 '2021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이용료) ① 본 이용 동의와 관련하여 '학교'는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에 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강사'에게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과 '강사'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인도된 저작물에 따른 출강시수 상당의 강사비를 지급한다.

제5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본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이 제3자의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강사'가 해당 분쟁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제6조(학교의 의무) '학교'는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콘텐츠 저작자는 동일성 유지권의 권리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지니며, '학교'는 예술강사의 동 의없이 예술강사가 공급한 콘텐츠의 가공을 하지 않는다.

제7조(제3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및 이용허락) '학교'는 제3자에게 제1조 소정의 저작물을(또는 저작인접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없다.

제8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학교'와 '강사'의 협의에 의하여 본 동의서에 따른 약정 사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동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 동의서 내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와 '강사'가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이용 동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학교'와 '강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학교'와 '강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학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의서 2통을 작성하여 '학교'와 '강사'가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1. . .

학 교 예술강사

주 소: 주 소:

학교명: (직인) 성 명: (인)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학교 & 예술강사 대상 통합 설명회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 매뉴얼

부록2

[부록 2]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 매뉴얼

슬기로운 계약 생활 활용 방법 : 서명대상자편

▶ [서명 진행] 프로세스





01. 계약서 수신(이메일)

OI.계약서 수신 ▶ 02. 문서 확인 및 태용 재우기 ▶ 02.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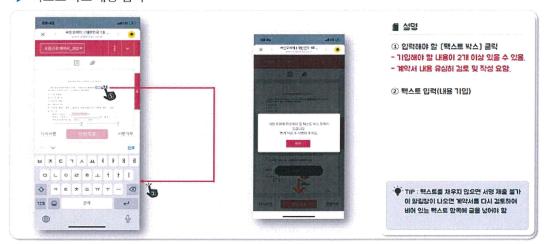
▶ 계약서 확인을 위한 서명하러가기



02, 문서 확인 및 내용 채우기(텍스트 박스)

01. 예약서 포션 ▶ 02. 문서 확인 및 내용 채우기 ≥ 63. 석명

▶ 텍스트 박스 내용 입력





02, 문서 확인 및 내용 채우기(체크 박스)

■ 81 계약서 수실 ▶ **02. 문서 확인 및 내용 채우기** ▶ 03. 서명

▶ 체크해야 할 항목 선택



02. 문서 확인 및 내용 채우기(파일 첨부)

▶ 첨부파일 등록





02. 문서 확인 및 내용 채우기(파일 첨부)

- 01.계약서 수신 ▶ **02. 문서 확인 및 내용 채우기** ▶ 03.세명

▶ 첨부하기 기능(1/2)



02. 문서 확인 및 내용 채우기(파일 첨부)

■ m. 취화된 유분 ▶ 02. 문서 확인 및 내용 채우기 ▶ m. 무결

▶ 첨부하기 기능(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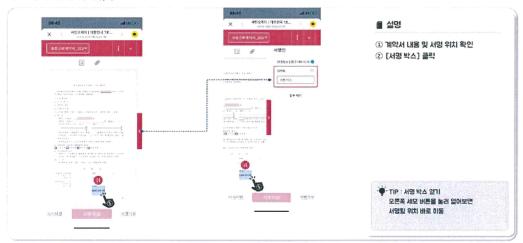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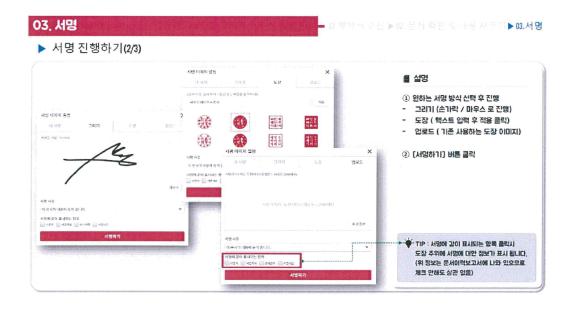


03. 서명

■ 00.계약서 수신 ▶ 02 문서 화인 및 내용 채우기**▶03.서명**

▶ 서명 진행하기(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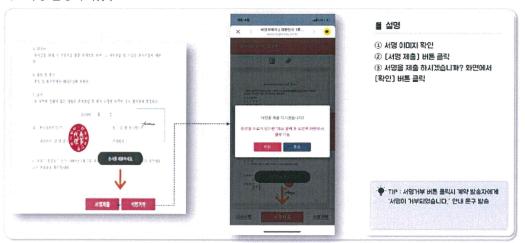




03. 서명

➡ D1.계약서 수신 ▶ D2. 문서 확인 및 내용 채우기 **▶ D3.서명**

▶ 서명 진행하기(3/3)





► 담당자 최종 검토 후 '수락' 처리되어야 근로계약 체결 완료 되며, 검토 완료 시 별도 메일 및 문자가 발송됩니다.

※검토 후 수정 필요시 재진행 필요

(안내 문자 발송 및 근로계약 체결 메일 재발송)

검토 사항

- o 출강 시수 확인
- ㅇ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 서명 및 필요 서류 제출

MEMO

MEMO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학교 & 예술강사 대상 통합 설명회

발 행 인 정희석(성결대학교 부총장)

발 행 일 2021. 4.

발 행 처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주 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디 자 인 (주)타라그래픽스 02) 6268-1002

주 소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재림관 807호

전 화 031) 467-8473~8

팩 스 031) 467-8389

홈페이지 www.skart.or.kr

본 책자는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기록 및 보존을 목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 성결대학교 신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사업운영본부